



제2906호 2023. 7. 21.(금)

www.jeonbuk.go.kr

고 시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4호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5호 도 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변경 고시 1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6호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7호 부안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0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8호 심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21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9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22
- 전라북도 고시 제2023-231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37

입법예고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7호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8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9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9
-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30호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88

공 고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사단법인 K드론남원시연협회) 90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8호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수정 공고 91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92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35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93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39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사단법인 임실문화예술진흥회) 94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44호 공인 등록 공고 95
-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96
-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7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97

지시사항

- 2023. 7. 14.(금)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105

시 군

- 익산시 공고 제2023-2001호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107
- 정읍시 고시 제2023-11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09
- 김제시 공고 제2023-46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111
- 완주군 고시 제2023-71호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112
- 순창군 고시 제2023-95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14

기 타

- 부안고등학교 공고 제2023-2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119

발행 전 라 북 도 (편집 공보관실 ☎(063)280-2186)
(54968)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4호

전라북도 문화재 지정 및 등록 고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3조, 제14조,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공 고 명 : 전라북도 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완주 봉림사지 석조여래삼존상(完州 鳳林寺址 石造如來三尊像)

- 지정종별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07호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박물관 내부
- 수량 및 크기 : 3구
 - 본존불 여래좌상 1구 : 총고 3069cm, 광배 1227*1680cm, 여래좌상 863*789cm
 - 우협시 보살입상 1구 : 총고 1502cm, 우협시 470*924cm
 - 좌협시 보살입상 1구 : 총고 1506cm, 좌협시 477*1007cm
- 시대 : 후백제~고려초, 10세기경
- 소유자(관리자) : 전북대학교 박물관
- 지정 사유
 - 삼존상은 본존불 여래좌상 1구(총고 3,069cm, 대좌·중대석·지대석·광배 포함), 우협시보살입상 1구(총고 1,052cm, 대좌·지대석 포함), 좌협시보살입상 1구(총고 1,506cm, 대좌·지대석 포함)로 구성됨. 삼존모두 머리부분은 없어진 상태임. 삼국시대에 유행했던 보살입상의 지느러미형 천의와 X형 천의, 통일신라 8~9세기에 유행했던 향마촉지인과 편단우견의 착의법, 광배와 대좌에 표현된 특징, 중대석에 조각된 가릉빈가와 주악천인상 등이 보이며, 고려시대의 특징인 두 다리 아래로 늘어진 군의 띠매듭과 삼존상 모두 대좌밑에 방형의 큰 지대석을 갖춘 구조이다.
 - 삼존상의 특징은 삼국시대 백제의 복고적인 형식과 통일신라시대 8~9세기 유행했던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 불상만의 새로운 조형성도 혼합되어 있다.

- 전체적으로 우수한 조형성을 보이고 있어 공예사적·학술적 가치는 물론, 후백제 불교조각의 단편을 찾아볼 수 있는 불상으로 희소적 가치가 높다.

나. 문화재 명칭 : 남원양씨 충장공파종중 소장 고서 및 고문서
(南原梁氏 忠壯公派宗中 所藏 古書 및 古文書)

- 지정종별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08호
- 소재지 : 남원시 양림길 14-9 남원향토박물관
- 수량 및 크기 : 180종 303점(고서 169종 235책, 고문서 11종 68점)
- 고서 <총 169종 235책>

연번	서명	발행시기	규격(cm)
1	심역(전)心易(全)	786(正祖 10)序	2卷1冊(102張) : 31.3 x 18.8 cm
2	역류易類	1792(正祖 16)題	1冊 ; 30.1 x 17.3 cm
3	주역대문周易大文	1784(正祖 8)	1帖 : 29.0 x 12.5 cm
4	태극어太極語	1784(正祖 8)	乾·坤2冊(104張) : 35.0 x 23.0 cm
5	서전대문書傳大文	1600년 전후(17世紀)	上·下2卷2冊 : 34.5 x 21.7 cm
6	서전대전詩傳大全	간사년미상	1卷1冊(缺本) : 33.8 x 22.0 cm
7	춘추집전대전春秋集傳大全	17世紀	1卷1冊(落帙) : 34.9 x 22.1 cm
8	가례家禮	1600년 전후(17世紀)	4卷1冊 : 36.0 x 22.5 cm
9	가의家儀	1649(仁祖 27)	2冊 ; 25.5 x 19.4 cm
10	상례비요喪禮備要	1848(憲宗 14)	上下2卷1冊(完秩) : 35.9 x 24.1 cm
11	예기집설대전禮記集說大全	17世紀	7卷3冊(落帙) : 34.5 x 22.0 cm
12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	1629(仁祖 7)	不分卷1冊 : 36.5 x 24.0 cm
13	맹자집주대전孟子集註大全	朝鮮後期	2卷1冊(缺本) : 33.0 x 22.0 cm
14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	1583(宣祖 16)跋	別集12卷1冊(落帙, 全本集17卷別集12卷) : 34.3 x 21.6 cm
15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	戊午	不分卷1冊 : 22.5 x 33.0 cm
16	대학장구대전大學章句大全	1870(高宗 7)	不分卷1冊 : 33.2 x 22.0 cm
17	학보유(全)學補遺(全)	간사년미상	1冊 ; 24.6 x 21.5 cm
18	전운옥편全韻玉篇	간사년미상	上下2卷1冊 : 31.0 x 20.0 cm
19	배자례부운략排字禮部韻略	17世紀	1冊 : 31.0 x 21.0 cm
20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17世紀	30卷15冊(缺本) : 34.3 x 22.5 cm
21	진서晉書	1515(正德 10)	7卷2冊(落帙) : 30.5 x 19.5 cm
22	사요취선史要聚選	1799(正祖 23)	7卷4冊(落帙, 全9卷5冊) : 28.7 x 18.9 cm
23	금강기金剛記	1784(正祖 8)	上下2卷1冊(68張) : 28.0 x 19.0 cm
24	실록實錄	간사년미상	1帖 ; 30.5 x 8.8 cm
25	용만분문록龍灣奔問錄	1663(顯宗 4)跋	不分卷1冊 ; 31.6 x 15.8 cm
26	한사일록漢節日錄	1841(憲宗 7)	不分卷1冊 ; 20.0 x 21.2 cm
27	경세지장經世指掌	1758(英祖 34)跋	2卷2冊 : 34.9 x 23.4 cm
28	증보역대총목增補歷代總目	1706(肅宗 32)跋	不分卷1冊(完秩) : 33.8 x 22.3 cm
29	정주소차程朱疏筭	1774(英祖 50)	上下2卷2冊(165張) : 32.0 x 19.0 cm
30	문묘향사목文廟享祀錄	1765(英祖 41)序	不分卷1冊 : 31.2 x 21.2 cm
31	청계선생장의록靑溪先生倡義錄	1765(英祖 41)序	1冊(67張) : 27.5 x 20.0 cm
32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	18世紀	2卷2冊 : 30.0 x 21.0 cm
33	남원양씨가승南原梁氏家乘	20世紀	不分卷1冊 : 29.3 x 19.0 cm

연번	서명	발행시기	규격(cm)
34	남원양씨충장공파가승 南原梁氏忠壯公派家乘	20世紀	不分卷 1冊 ; 31.0 x 22.5 cm
35	남원양씨세계대南原梁氏世世代	20世紀	不分卷 1冊 ; 27.5 x 19.0 cm
36	남원양씨세계南原梁氏世系	20世紀	不分卷 1冊 ; 28.3 x 17.3 cm
37	남원양씨세보南原梁氏世譜	1861(哲宗 12)	5卷 1冊 ; 35.0 x 22.0 cm + 딸림자료 1매
38	남원양씨세보南原梁氏世譜	간사년미상	不分卷 1冊 ; 27.6 x 20.0 cm
39	남원양씨세보(용성군파가승)南原梁氏世譜(龍城君派家乘)	간사년미상	不分卷 1冊 ; 26.6 x 25.5 cm
40	양씨충장공자손가승 梁氏忠壯公子孫家乘	간사년미상	不分卷 1冊 ; 29.5 x 19.0 cm
41	사마방목司馬榜目	乙亥	不分卷 1冊(30張) ; 24.0 x 22.5 cm
42	갑술증광용방甲戌增廣龍榜	1754(英祖 30)以後寫	不分卷 1冊(7張) ; 35.8 x 25.5 cm
43	계유추사마방癸酉秋司馬榜	1753(英祖 29)以後寫	不分卷 1冊 ; 35.5 x 24.0 cm
44	기유식년사마방목己酉式年司馬榜目	1729(英祖 5)	不分卷 1冊 ; 32.8 x 20.5 cm
45	사마방목司馬榜目	1783(正祖 7)以後寫	不分卷 1冊 ; 38.0 x 23.3 cm
46	남원부사마안南原府司馬案	19世紀	不分卷 1冊 ; 32.0 x 25.8 cm
47	남원부사마재사마안록 南原府司馬齋司馬案錄	1918	不分卷 1冊 ; 29.5 x 21.1 cm
48	승경삼계묘별시증광사마방목 崇禎三癸卯別試增廣司馬榜目	1783(正祖 7)	1冊 ; 33.5 x 21.6 cm
49	품안品案	[1767년(영조 43)]以後寫	1冊 ; 4段 ; 32.5 x 17.6 cm
50	계술수언록繼述受宴錄	1766(영조 42)內賜	1冊 ; 34.0 x 21.5 cm
51	동래박의(초)東萊博議(抄)	간사년미상	不分卷 1冊 ; 25.4 x 19.8 cm
52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1552(嘉靖 31)	1冊(缺本) ; 24.5 x 14.2 cm
53	주서절요朱書節要	18世紀	不分卷 1冊(87張) ; 31.5 x 19.7 cm
54	대당삼장성교大唐三藏聖教	간사년미상	1帖(20面) ; 27.4 x 16.8 cm
55	국예관승록國藝館崇祿	癸丑	不分卷 1冊 ; 20.2 x 13.1 cm
56	방약합편方藥合編	19世紀	1冊 ; 32.2 x 19.5 cm
57	신선비전서神仙秘傳書	간사년미상	1冊 ; 10.0 x 5.0 cm
58	보증참찬비전천기대요補增參贊秘傳天機大要	1737(英祖 13)	2卷 2冊(完帙) ; 32.5 x 21.5 cm
59	난정蘭亭	1788(正祖 12)	1帖(16面) ; 22.0 x 13.5 cm
60	무극서결無極書訣	1773(英祖 49)	1冊(40張) ; 32.0 x 21.5 cm
61	양씨보장(上)梁氏寶藏(上)	1914跋	1冊 ; 30.7 x 20.1 cm
62	주해무쌍초간법첩註解無雙草簡法帖	1928	1冊 ; 13.3 x 8.3 cm
63	회지십칠첩羲之十七帖	17世紀	不分卷 1冊 ; 34.0 x 24.4 cm
64	신편고금사문류취新編古今事文類聚	19世紀	3卷 1冊(缺本) ; 25.0 x 17.2 cm
65	신편취어新編彙語	17世紀	10卷 4冊(缺本) ; 26.0 x 18.9 cm
66	요람(단)婁覽(單)	1782(正祖 6)	1冊 ; 27.5 x 24.5 cm
67	류원초묘類苑叢寶	1643(仁祖 21)序	2卷 1冊(缺本) ; 28.6 x 17.4 cm + 딸림자료 1매
68	후사집(합부)候謝輯(合附)	간사년미상	1冊 ; 22.8 x 18.3 cm
69	아미산월가[娥眉山月歌]	간사년미상	1冊 ; 22.0 x 14.5 cm
70	여권자산우경[與權子山禹卿]	1922以後寫	1冊 ; 22.4 x 21.3 cm
71	참곡법론[斬曲凡論]	간사년미상	1冊 ; 24.5 x 21.0 cm
72	경호(三)敬蒿(三)	간사년미상	1冊 ; 31.8 x 17.6 cm

연번	서명	발행시기	규격(cm)
73	계적桂籍	간사년미상	1冊 ; 35.6 x 22.8 cm
74	계적(一)桂籍(一)	18세기	1冊(158張) ; 26.5 x 13.0 cm
75	고문古文	간사년미상	1冊 ; 30.5 x 19.0 cm
76	고문진보(단)古文眞寶(單)	간사년미상	不分卷 1冊 ; 15.2 x 23.6 cm
77	관서창수록關西唱酬錄	1572년(선조 5)	2冊 ; 34.9 x 22.7 cm
78	관서창수록關西唱酬錄	1626-1638	1冊(23張) ; 30.9 x 35.0 cm
79	근규近規	간사년미상	1冊 ; 25.8 x 19.0 cm
80	금의수상(초류)錦衣繡裳(抄類)	壬辰	1冊 ; 31.0 x 21.0 cm
81	금총(전)錦叢(全)	간사년미상	1冊 ; 14.0 x 17.5 cm
82	당백가시唐百家詩	中宗-明宗年間(1506-1567)	4冊 ; 28.5 x 18.0 cm
83	당송분류률시唐宋分類律詩	17세기以前寫	2冊 ; 33.8 x 23.5 cm
84	당시唐詩	간사년미상	1冊 ; 30.5 x 17.5 cm
85	당음唐音	甲戌	1冊 ; 24.5 x 14.2 cm
86	당음唐音	간사년미상	1冊 ; 29.0 x 22.0 cm
87	동사집東槎集	1609(光海君 1)	1冊 ; 34.0 x 24.0 cm
88	동시고조東詩古調	간사년미상	1冊 ; 23.0 x 20.5 cm
89	등림鄧林	庚申	1冊 ; 19.4 x 22.4 cm
90	뇌우이雷雨以	간사년미상	1冊 ; 29.0 x 19.1 cm
91	발방拔芳	간사년미상	1冊 ; 23.0 x 22.3 cm
92	보허록步虛錄	己未	1冊 ; 23.0 x 16.7 cm
93	비룡리견飛龍利見	간사년미상	1冊 ; 23.5 x 22.5 cm
94	류취類聚	간사년미상	1冊 ; 25.0 x 17.0 cm
95	사보(單)私寶(單)	간사년미상	1冊 ; 30.5 x 19.5 cm
96	상설고문진보대전후집 詳說古文眞寶大全後集	1796(正祖 20)	8卷 4冊(落帙) : 27.0 x 18.4 cm
97	성조풍아盛朝風雅	丁酉	1冊 ; 25.7 x 15.8 cm
98	세병마행洗兵馬行	간사년미상	1冊 ; 25.8 x 20.5 cm
99	수보백(부종)袖寶百(賦宗)	丁巳	1冊 ; 28.4 x 10.4 cm
100	심경心經	간사년미상	1冊 ; 29.5 x 19.0 cm
101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	1799(正祖 23), 1801(純祖 1)內賜	11卷 5冊(完秩) : 33.5 x 22.0 cm
102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	1799(正祖 23)奉敎書	11卷 5冊(完秩) : 33.7 x 22.0 cm
103	려두보주驪頭寶珠	19세기	1冊 ; 24.6 x 11.5 cm
104	연참수기(건)鉛槧隨記(乾)	19세기	1冊 ; 32.1 x 17.4 cm
105	렴락풍아濂洛風雅	1775(英祖 51)	1冊(88張) : 31.0 x 21.5 cm
106	오언고시(全)五言古詩(全)	1774(英祖 50)	1冊 ; 31.7 x 17.6 cm
107	용정대척龍庭大榻	간사년미상	1冊 ; 25.4 x 15.6 cm
108	육화집(전)六化集(全)	1913	1冊 ; 26.5 x 19.5 cm
109	일록日錄	朝鮮後期	1冊 ' 24.8 x 16.1 cm
110	전대殿對	간사년미상	1冊 ; 17.3 x 21.2 cm
111	전제筵蹄	간사년미상	1冊 ; 23.9 x 15.4 cm
112	제자시초諸子詩抄	간사년미상	1冊 ; 25.5 x 15.5 cm
113	진영수어震英粹語	1599-1636(宣祖-仁祖年間)	1卷 1冊 ; 28.0 x 19.3 cm
114	진영수어震英粹語	간사년미상	1冊 ; 25.7 x 23.0 cm
115	책가대방策家大方	간사년미상	1冊 ; 25.0 x 17.2 cm
116	책용류초策用類抄	간사년미상	1冊 ; 28.5 x 23.4 cm + 딸림자료
117	초사楚辭	간사년미상	1冊 ; 31.2 x 15.5 cm
118	타완(극)他巖(極)	간사년미상	1冊 ; 24.8 x 11.6 cm

연번	서명	발행시기	규격(cm)
119	형위최응자菴園取雄者	간사년미상	1冊 ; 30.2 x 18.0 cm
120	화정개락용성조출花庭開落容成造出	19世紀	1冊 ; 31.3 x 16.4 cm
121	황명제가皇明諸家	간사년미상	1冊 ; 28.3 x 18.6 cm
122	황화집東華集	1609(光海君 1)	不分卷 1冊 ; 34.7 x 22.0 cm
123	휘록彙錄	간사년미상	1冊 ; 27.0 x 16.7 cm
124	고죽유고孤竹遺稿	1683(肅宗 9)	1冊 ; 31.3 x 20.0 cm
125	동계집東谿集	간사년미상	2卷 1冊(落帙) ; 29.8 x 18.8 cm
126	동애만고東崖晩稿	1618(光海君 10) 이전	1冊 ; 33.7 x 22.8 cm
127	만록漫錄	간사년미상	1冊 ; 20.0 x 16.0 cm
128	만현선생문집晩軒先生文集	1805(純祖 5)跋	4卷 2冊(完帙) ; 32.2 x 20.8 cm
129	목은문고牧隱文藁	1583(宣祖 6)	18卷 4冊(完帙) ; 35.4 x 24.0 cm + 딸림자료 10매
130	목재집牧齋集	1722-1802	乾·坤 2冊 ; 32.0 x 20.0 cm
131	무극어(二)无極語(二)	간사년미상	1冊 ; 26.8 x 16.6 cm
132	무극유록无極遺錄	18世紀後半	1冊 ; 27.0 x 17.3 cm
133	무극집无極集	19世紀	16卷 8冊 ; 31.4 x 19.5 cm
134	무극행록(全)无極行錄(全)	19世紀	1冊 ; 32.4 x 20.1 cm
135	무명계유고無名齋遺稿	간사년미상	不分卷 1冊 ; 25.0 x 15.0 cm
136	봉래행록蓬萊行錄	1592(宣祖 20) 이전	1冊 ; 36.9 x 26.4 cm
137	분류보주이태백시分類補註李太白詩	1616(光海 8)	1冊 ; 34.5 x 21.7 cm
138	상언上言	간사년미상	1冊(12張) ; 30.3 x 19.6 cm
139	송강유고松江遺稿	1632(仁祖 10)跋	上下 2卷 1冊(完帙) ; 29.5 x 19.5 cm
140	송암고松嶽稿	1574(宣祖 7)	1冊 ; 33.3 x 23.1 cm
141	시사詩史	간사년미상	1冊 ; 24.2 x 18.7 cm
142	신독재선생년보愼獨齋先生年譜	1871(高宗 8)	上下 2卷 1冊 ; 31.2 x 20.4 cm
143	실기부록검유實記附錄拾遺	1886(高宗 23)序	不分卷 1冊 ; 31.0 x 19.7 cm
144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1796(正祖 20)	2卷 1冊(完帙) ; 32.0 x 20.5 cm
145	왕엄주집(초)王弇州集(抄)	간사년미상	1冊 ; 26.5 x 17.7 cm
146	용남만록龍南漫錄	1838(憲宗 4)	不分卷 1冊 ; 29.8 x 19.1 cm
147	용남만록龍南漫錄	19世紀	1冊(6張) ; 32.5 x 27.2 cm + 딸림자료 1매
148	우암선생문집尤菴先生文集	1717(肅宗 43)	2卷 1冊(缺本) ; 30.4 x 19.4 cm
149	우암선생문집尤菴先生文集	1719(肅宗 45)	別集 6卷 2冊(缺本) ; 31.5 x 19.9 cm
150	류천유고柳川遺稿	1639(仁祖 17)序	1冊 ; 29.0 x 19.3 cm
151	류향선생시집柳巷先生詩集	1602(宣祖 35)	不分卷 1冊(完帙) ; 31.0 x 20.4 cm
152	이상은시집李商隱詩集	明宗-宣祖初(1546-)	10卷 2冊(完帙) ; 29.5 x 19.2 cm
153	인제집忍齋集	16世紀말-17世紀초(1586-1627)	3卷 3冊(缺本) ; 34.0 x 22.8 cm
154	자양시초紫陽詩鈔	간사년미상	1冊 ; 28.0 x 18.2 cm
155	제문祭文	丁丑	1冊 ; 32.0 x 20.8 cm
156	제호만고霽湖晩稿	17世紀	1冊 ; 37.7 x 24.8 cm
157	제호만고霽湖晩稿	17世紀	1冊 ; 27.5 x 23.5 cm
158	제호집霽湖集	1647(仁祖 25)	8卷 1冊(落帙, 全本集 11卷續集 2卷) ; 27.8 x 18.0 cm
159	진암집晉菴集	英祖 38(1762)	8卷 4冊(完帙) ; 30.8 x 18.8 cm
160	청계유고靑溪遺稿	1618(光海君 10)	上下 2卷 1冊 ; 29.7 x 19.5 cm
161	청계유고(全)靑溪遺稿(全)	1618(光海君 10)初刊	2卷 1冊 ; 28.0 x 19.5 cm
162	청계집(全)靑溪集(全)	1618(光海君 10) 이후	不分卷 1冊 ; 36.5 x 25.0 cm + 딸림자료

연번	서명	발행시기	규격(cm)
163	초당집(곤)草堂集(坤)	간사년미상	1冊 ; 24.3 x 18.7 cm
164	한골동(一)閑涖董(一)	19世紀	1冊 ; 32.2 x 20.8 cm
165	해광선생집海狂先生集	1783(正祖 7)序	2卷1冊(完帙) : 26.0 x 17.5 cm
166	향산삼체법香山三體法	1515(中宗 10)頃	1冊 ; 31.6 x 19.5 cm
167	회은집晦隱集	1723(景宗 3)頃	3卷2冊 : 29.1 x 17.4 cm
168	산보문원사글冊補文苑植橘	[肅宗年間(1684-1700)頃]	2卷1冊 : 27.0 x 17.0 cm
169	야언野言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1625 (仁祖 3)跋	不分卷1冊 : 28.0 x 19.5 cm

- 고문서 <총 11종 68점>

연번	고문서 종류	연도	규격(cm)
1-1-01	양명인(梁命寅) 승보시(陞補試) 합격증	1707년(숙종 33, 丁亥)	50×32
1-2-01	양진핵(梁振翮) 진사 합격 백패	1635년(인조 13, 승정 8)	37×97
1-2-02	양우하(梁宇夏)의 진사 합격 백패	1681년(숙종 7)	41×90
1-2-03	양주익(梁周翊)의 백패	1753년(영조 29, 건륭 18)	95×48
1-2-04	양성본(梁誠本)의 백패	1783년(정조 7, 건륭 48)	93×44.5
1-3-01	양도(梁燾)의 문과 합격 홍패	1644년(인조 22)	90×68
1-4-01	시권(양 경우)	1597년(선조 30)	80×300
1-4-02	시권(양 경우)	1616년(광해 8)	85×225
1-4-03	시권(양진핵)	1635년(인조 13)	81×218
1-4-04	시권(양명신)	1729년(영조 5)	70×200
1-4-05	시권(양주익의 진사시 합격 시권)	1753년(영조 29, 건륭 18)	76×190
1-4-06	시권(미상)	미상	73×173
1-4-07	시권	미상	68×97
1-4-08	시권	미상	67×172
1-4-09	시권	미상	72.5×127
1-4-10	시권	미상	73×165
1-4-11	시권	무인년(戊寅年)	69×191
1-4-12	시권	미상	69×156
1-4-13	시권	미상	72×177
1-4-14	시권	미상	70×181
1-4-15	시권	미상	73×96.5
1-4-16	시권	미상	71×187
1-4-17	시권	미상	69×460
1-4-18	시권	미상	68×65
1-4-19	시권	미상	69×445
1-4-20	시권	미상	45×307
2-1-01	양주익(梁周翊)의 고신(교지)	1786년(정조 10, 건륭 51)	57.5×82
2-1-02	양주익(梁周翊)의 교지(고신)	1794년(정조 18, 건륭 59)	52×74
2-1-03	양주익(梁周翊)의 교지(고신)	1794년(정조 18, 건륭 59)	52.5×72
2-1-04	양주익(梁周翊)의 교지(고신)	1795년(정조 19, 건륭 60)	53.5×75
2-1-05	숙인홍씨(淑人洪氏)의 교지(고신)	1796년(정조 20, 가경 1)	56.5×80
2-1-06	양주익(梁周翊)의 교지(고신)	1799년(정조 23, 가경 4)	59×61
2-1-07	양주익(梁周翊)의 교지	1800년(정조 24, 가경 5)	54.5×77
2-1-08	양주익(梁周翊)의 교지(고신)	1800년(정조 24, 가경 5)	52×73
2-1-09	양주익(梁顯光)의 교지	1802년(순조 2, 가경 7)	51×72
2-1-10	숙부인이씨의 교지(고신)	1802년(순조 2, 가경 7)	69×89

연번	고문서 종류	연도	규격(cm)
2-1-11	숙부인 홍씨의 교지(교신)	1802년(순조 2, 가경 7)	68.5×89.5
2-1-12	양명신(梁命辰)의 교지(교신)	1802년(순조 2, 가경 7)	69×85
2-1-13	유인이씨(孺人李氏)의 교지(교신)	1802년(순조 2, 가경 7)	68.5×90
2-2-01	시호(諡號) 교지	1796년(정조 20)	134×78cm
2-3-01	녹표	1795년(정조 19, 건륭 60)	108×73
2-4-01	순조의 치제문(致祭文)	1802년(순조 2)	56×56
3-1-01	양명인(梁命寅)의 준호구	1724년(경종 4)	47×53
3-1-02	양명신(梁命辰)의 준호구	1741년(영조 17)	55×35
3-1-03	양원익(梁元翊)의 준호구	1741년(영조 17)	54×34
3-1-04	양현광(梁顯光)의 41 세 호구단자	1822년(순조 22)	76×47
3-1-05	양현광(梁顯光)의 호구단자	1824년(순조 24) 윤 7 월(甲申閏七月)	62×65
3-1-06	양인광(梁彦光)의 호구단자	1827년(순조 27, 丁亥)	76×47
3-1-07	양현광의 호적단자	1836년(순조 36, 丙申)	69×44
3-1-08	양호광(梁浩光)의 호적단자	1839년(헌종 5, 己亥)	70×42
3-1-09	양기옥(梁基玉)의 호적단자	乙巳(1845, 헌종 11)	65×38
3-1-10	양기옥(梁基玉)의 호적단자	1848년(헌종 14, 戊申)	68×65
3-1-11	양봉옥의 호적단자	1854년(철종 5, 甲寅)	51×48
3-1-12	양봉옥(梁鳳玉)의 호적단자	1857년(철종 8, 丁巳)	56×56
3-1-13	양봉규(梁鳳珪)의 호적단자	己巳(1869년, 고종 6)	64×43
3-1-14	양봉규(梁鳳珪)의 호적단자	1872년(고종 9, 壬申)	62×45
3-2-01	양현광(梁顯光)의 소지	1830년(순조 30) 4 월	92×93
3-2-02	양현광(梁顯光)의 소지	1830년(순조 30) 윤 4 월	72×42
3-2-03	양현광(梁顯光)의 소지	1831년(순조 31) 1 월	100×63
3-2-04	양현광(梁顯光)의 소지	1831년(순조 31) 2 월	99×62
3-2-05	양현광(梁顯光)의 소지	1832년(순조 32, 임진)윤9월	94×61
3-2-06	양현광(梁顯光) 소지	1833년(순조 33) 3 월	71×42
3-2-07	양현광의 소지	계사년(1833) 7 월	98×62
3-2-08	양현광(梁顯光) 등의 상서	1833년(순조 33, 癸巳)	97×64
3-2-09	양현광(梁顯光) 등의 상서(上書)	丁酉 10 월(1837, 헌종 3)	73×74
3-3-01	허심(許漣) 등의 수기	1829년(순조 29) 11 월	25×38
3-4-01	양현광(梁顯光)의 간찰	1831년(순조 31)	70×47
3-4-02	허질(許耆)의 간찰	미상(1831년 전후)	24×36

- 시 대 : 조선시대(1572~1872년)
- 소유자(관리자) : 남원양씨 충장공파종중(대표 양해석)
- 지정 사유
 - 남원양씨 충장공파종중 소장 고서 및 고문서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한 집안의 과거급제와 관리임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및 준호구, 호구단자, 소송관련자료 등 조선후기 지방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서 169종 235책과 고문서 11종 68점으로 모두 180종 303점이다.
 - 판본학적 가치를 지니는 희귀본 및 임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 양대박, 양경우, 양형우, 양주익 등 학술적·사회사적으로 영향력이 큰 집안 인물 관련 유고집, 문집 등은 지방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다.

다. 문화재 명칭 : 부안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扶安 開巖寺 釋迦如來三尊佛坐像)

- 지정종별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09호
- 소재지 :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
- 수량 및 크기 : 1건 3점
 - 석가여래상 : 높이 177.4cm, 무릎 폭 117.5cm
 - 보현보살상 : 높이 159.0cm, 무릎 폭 105.0cm
 - 문수보살상 : 높이 164.0cm, 무릎 폭 105.0cm
- 시대 : 조선후기(17세기 전반)
- 소유자(관리자) : 개암사
- 지정 사유
 - 삼존불좌상은 본존상(총고 177.4cm), 우협시보살상(총고 159cm), 좌협시보살상으로(총고 164cm) 구성되었다. 목조팔각좌대를 포함하여 협시보살상의 보관, 보개, 흉식, 지물 등이 잘 남아 있다. 개암사는 1640년 대웅보전이 조성되었고 1647년 삼존불을 모셨다는 개암사중건사적기가 있으며 불상의 복장물에서 '기축년(1649년)'이라는 기년명(紀年銘)이 발견되어 불상의 조성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 삼존불좌상은 조선 후기 목조불상 중에서도 큰 규모에 속하며, 좌대를 포함하여 보살상의 장식, 지물 등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7세기 수연, 영철, 운해 등으로 이어지는 수연파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변화양상이 보이며, 조선 후기 불·보살상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기준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등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

라. 문화재 명칭 : 태인 방각본(泰仁 坊刻本)

- 지정종별 :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99호
- 소재지 :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원촌 1길 44-2
- 수량 및 목록 : 14종 30책

연번	유물명	구성/규격(cm)	간행년도(시대)
1	상설고문진보대전 【詳說古文眞寶大全】 【後集】	10권5책 / 19.0×28.0	1796년
2	증산염락풍아 【增刪濂洛風雅】	5권2책 / 17.5×26.2	1796년
3	사요취선 【史要聚選】	9권5책 / 19.3×28.2	1799년
4	사문유취초 【事文類聚抄】	3권3책 / 20.0×30.5	1799년
5	대명율시 【大明律詩】	2권2책 / 17.0×25.0	1800년
6	공자통기 【孔子通記】	8권3책 / 19.1×29.0	1803년
7	효경대의 【孝經大義】	1책 / 21.0×30.8	1803년

8	상설고문진보대전 【詳說古文眞寶大全】 【前集】	12권3책 / 19.5×29.0	1803년
9	공자가어 【孔子家語】	2책 / 19.2×29.0	1804년
10	신간소왕사기 【新刊素王事記】	1책 / 19.2×29.0	1804년
11	동자습 【童子習】	2권1책 / 17.1×27.3	1804년
12	농가집성 【農家集成】	1책 / 28.0×19.3	1806년
13	신간구황촬요 【新刊救荒撮要】	1책 / 18.8×27.2	1806년
14	명심보감초 【明心寶鑑抄】	1책 / 16.1×25.8	1844년

○ 소유자(관리자) : 유 훈

○ 지정 사유

- 태인 방각본은 조선시대에 태인지역에서 민간 출판업자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책으로 14여 종이 전하며, 대부분 목판본이며 신간구황촬요 등 일부 한글이 병용되어 있다.
- 태인 방각본은 간기를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제작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방각본을 통해 독서행위가 소수 사대부에서 다수 일반인에게 확대된 계기가 되어 문헌적, 역사적 가치가 있다.

마. 문화재 명칭 : 김제 홍심정 소장유물(金堤 紅心亭 所藏遺物)

○ 지정종별 :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제11호

○ 소재지 : 전라북도 김제시 성산길 40(홍심정)

○ 수량 및 크기 : 3점 (선생안, 사안, 시지)

- 선생안: 서책(한지, 책자, 가로 30.8cm×세로 48cm, 17장)

- 사안: 서책(한지, 책자, 가로 30.3cm×세로 47.2cm, 33장)

- 시지: 종이(한지, 문서: 노란색 문서105cm×60cm, 빨간색 문서 80cm×48cm)

○ 시대 : 1892년(선생안, 사안), 1903년(대회시지)

○ 관리단체 : 김제 홍심정(대표 경은모)

○ 등록 사유

- 홍심정은 조선 중후반에서 현재까지의 활터의 변천과정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소장유물은 역대 사두(射頭)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 선생안(先生安) 1책, 역대 회원 명부인 사안(射安) 1책 2권, 활쏘기 대회 기록지인 시지(試紙) 1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선생안은 1789년부터 현재까지의 사두의 명단이 단절됨이 없이 기재된 것으로 1892년 조방순(당시 재무)에 의해 재작성 되었다. 사안은 1789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원의 명단을 기재하였으며, 시지는 1903년 최초의 민간 사정의 시지로 개화기의 활쏘기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써 역사적 가치가 높다.

3.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전주시청 문화유산과

- 주소: (우)55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전화 : 063-281-5356 / 전송 : 063-279-4598

다. 남원시청 문화예술과

- 주소: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 전화 : 063-620-6173 / 전송 : 063-620-6707

라. 부안군청 문화관광과

- 주소: (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 전화 : 063-580-4711 / 전송 : 063-580-4565

마. 정읍시청 동학문화재과

- 주소 : (우)56180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
- 전화 063-539-6914 / 전송 : 063-539-6530

바. 김제시청 교육문화과

- 주소: (우)54386 김제시 중앙로 40
- 전화 : 063-540-3882 / 전송 : 063-540-3454

전라북도 공고 제2023-225호

도 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변경 고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지정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고시명 : 도 지정문화재 지정 현황 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문화재 명칭 : 전주 조경묘

- 지정종별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 규모 : 1동(1,612.2㎡)
- 시대 : 1771년
- 관리단체 : 전주시
- 정정사항 : 규모
 - 정정 전 : 1동*(1,612.2㎡)
 - * 정묘, 동월랑, 서월랑, 내신문+좌우첨각, 외신문
 - 정정 후 : 4동(1,565.79㎡, 동월랑, 서월랑, 내신문+좌우첨각, 외신문)

3. 변경 지정일 : 도보 고시일

4. 연락처

가.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전화 : 063-280-3145 / 전송 : 063-280-2539

나. 전주시청 문화유산과

- 주소 : (우)54994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 전화 : 063-281-5356 / 전송 : 063-279-4598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6호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시행계획 승인한 내용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사 업 명 : 석담지구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전북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등 3개리 일원
3. 사 업 목 적 : 농경지 침수 저감, 경지이용률 증대, 영농환경개선 등
4. 수 혜 면 적 : 197ha
5. 사 업 개 요
 - 수 운 공 : 배수장 2개소(유수지 보강)
 - 평 야 부 : 배수로 4조 L=4,602m(현대화 및 정비)
 - 복 토 : 13.8ha(19,658m²)
6. 사업 기간 : 2023. 7 ~ 2027. 12.(5개년)
7. 총 사업비 : 15,250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전화063-540-1198)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붙임 조서 참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김제시 석담리	613-1	도로	41,343.0	2,433.0	국(국토교 통부)					
2	김제시 반월리	147-2	답	2,136.0	67.0	이명석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1길 62-23				
3	김제시 반월리	147-3	답	2,932.0	8.0	이명석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1길 62-23				
4	김제시 반월리	148-1	답	1,719.0	100.0	윤희순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공북2길 11(태평동)				
5	김제시 반월리	148-2	답	2,073.0	104.0	윤희순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공북2길 11(태평동)				
6	김제시 반월리	148-3	답	2,883.0	94.0	박은자	전라북도 진주시 덕진구 원성덕안길 25-3(성덕동)				
7	김제시 반월리	148-4	답	3,693.0	89.0	정용택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4길 131-38				
8	김제시 반월리	682-0	구거	53,295.0	695.0	국(농림축 산식품부)					
9	김제시 반월리	684-0	도로	1,848.0	946.0	국(농림축 산식품부)					
10	김제시 반월리	147-1	답	1,838.0	156.0	서창욱	전라북도 진주시 완산구 서곡로 22 102동 1904호 (효자동3가 서곡두산아파 트)				
11	김제시 석담리	658-0	답	8,859.7	576.0	이규형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농원3길 35	백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변영로 2572	근저당 권	
12	김제시 석담리	675-0	답	3,626.5	161.0	전주이씨임 영대군파8 세현정공석 담문중종회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리 563				
13	김제시 석담리	676-0	답	4,737.0	482.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14	김제시 석담리	699-0	답	3,539.4	151.0	조현상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변영로 257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5	김제시 석담리	700-0	답	2,461.0	179.0	조현상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2570				
16	김제시 석담리	788-0	구 거	2,685.2	812.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17	김제시 석담리	789-0	도 로	2,559.0	24.0	국(농림축 산식품부)					
18	김제시 석담리	790-0	구 거	1,222.6	26.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19	김제시 석담리	798-0	구 거	1,329.2	1,133.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0	김제시 석담리	799-0	도 로	2,293.9	64.0	국(농림축 산식품부)					
21	김제시 석담리	800-0	구 거	432.1	10.0	국(농림축 산식품부)					
22	김제시 석담리	623-0	구 거	23,767.0	19,393.0	국(농림축 산식품부)					
23	김제시 석담리	8-93	도 로	198.0	36.0	국(국토교 통부)					
24	김제시 석담리	7-68	구 거	255.0	11.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25	김제시 석담리	771-0	답	1,629.7	345.0	조명순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1길 18-5	백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2572	근저당	
26	김제시 석담리	774-0	답	4,087.4	32.0	조명순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1길 18-5	백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번영로 2572	근저당	
27	김제시 석담리	775-0	답	3,343.7	159.0	이향란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22, 2326동 1403호 (상동, 라일락마을)				
28	김제시 석담리	776-0	답	2,343.5	51.0	전영기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7로 177	최은아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3길 25, 103동 203호 (어양동, 어양이편한 세상아파트)	가압류	
29	김제시 석담리	777-0	답	1,458.8	56.0	김명식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길 1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김제시 석담리	784-0	구거	794.6	759.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1	김제시 석담리	785-0	구거	197.1	32.0	국(농림축 산식품부)					
32	김제시 석담리	786-0	구거	443.6	2.0	국(농림축 산식품부)					
33	김제시 석담리	623-2	구거	8,405.0	2,196.0	국(농림축 산식품부)					
34	김제시 석담리	1001-0	구거	1,061.0	67.2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35	김제시 석담리	899-0	답	3,849.5	3.1	강철신	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장신동원1길 13-3				
36	김제시 석담리	900-0	답	3,137.9	1.3	송영애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공술1길 38	백구농 업협동 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변영로 2572	근저당 권	
37	김제시 석담리	6-1	답	1,765.0	117.0	최범수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변영3길 18-1				
38	김제시 마산리	581-0	답	2,629.6	245.0	정제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4길 4-8(서신동)				
39	김제시 마산리	466-16	하천	14,509.0	3,436.0	국(환경부)					
40	김제시 마산리	471-0	구거	11,855.0	8,140.0	국(농림축 산식품부)					
41	김제시 마산리	481-0	도로	1,613.0	4.0	국(농림축 산식품부)					
42	김제시 마산리	686	도로	1,392.9	10.0	국(농림축 산식품부)					
43	김제시 마산리	690	구거	923.3	6.0	국(농림축 산식품부)					
44	김제시 마산리	225-1	답	3,048.0	8.0	김정임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길 259	전북지 리산농 업협 조합	전라북도 남원시 의총로28(금동)	근저당 지상권	
45	김제시 마산리	226-1	답	4,185.0	4.0	윤미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19 301호(대성하 이츠빌3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6	김제시 마산리	622-0	답	5,372.5	256.0	정진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로 14 101동 401호(주공1차 아파트)				
47	김제시 석담리	9-28	구 거	3,453.0	18.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48	김제시 마산리	535-0	답	2,275.6	382.0	노진환	익산시 부송동 669 리젠시빌아파 트 503-702				
49	김제시 마산리	682-0	구 거	1,363.6	10.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50	김제시 마산리	492-0	답	1,999.4	176.0	정정도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583, 503호 (평화동, 평화맨션)				
51	김제시 석담리	702-0	답	4,467.9	243.0	이원만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2길 126				
52	김제시 석담리	726-0	답	5,017.8	401.0	김남순 (7/1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반월5길 8, 102동 506호 (반월동, 삼오아파트)				
						황미선 (2/11)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 11, 101동 604호 (율곡동, 경북혁신KCC 스위첸)				
						황국현 (2/11)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갈산1로 12, 1007동 305호 (전북혁신엘에 이지아파트10 단지)				
53	김제시 석담리	791-0	구 거	395.7	363.0	국(농림축 산식품부)					
54	김제시 석담리	793-0	구 거	1,361.4	6.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55	김제시 석담리	794-0	도 로	2,364.8	33.0	국(농림축 산식품부)					
56	김제시 석담리	795-0	구 거	2,140.2	12.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57	김제시 석담리	796-0	구 거	1,071.1	10.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58	김제시 석담리	797-0	도로	2,234.7	10.0	국(농림축 산식품부)					
59	김제시 석담리	5-40	구 거	177.0	179.0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60	김제시 석담리	806-0	답	5,153.5	222.1	이연순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2길 140				
61	김제시 석담리	829-0	답	3,380.0	164.7	박요한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마전1길 6				
62	김제시 석담리	852-0	답	4,296.8	10.9	이복자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반월길 41				
63	김제시 석담리	875-0	답	1,977.4	10.6	정광호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길 261				
64	김제시 마산리	674-0	구 거	2,920.4	2,920.4	국(농림축 산식품부)					
65	김제시 마산리	675-0	도로	2,332.4	2,332.4	국(농림축 산식품부)					
66	김제시 석담리	1047-0	도로	65.8	65.8	국(농림축 산식품부)					
67	김제시 석담리	1003-0	답	3,753.3	21.8	강성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40 701동 1203호(가경동 청주가경뜨란채 7단지아파트)				
68	김제시 석담리	975-0	구 거	967.7	4.9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69	김제시 석담리	973-0	구 거	725.5	5.4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70	김제시 석담리	971-0	도로	1,070.7	6.6	국(농림축 산식품부)					
71	김제시 석담리	969-0	구 거	1,030.0	10.4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72	김제시 마산리	694-0	구 거	1,268.0	6.4	국(농림축 산식품부)					
73	김제시 마산리	698-0	구 거	843.9	13.2	국(농림축 산식품부)					
74	김제시 마산리	262-3	전	63.0	8.0	나재훈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길 10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5	김제시 마산리	321-1	답	631.0	188.0	나재훈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길 100	전라북도 주신동조합 성용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02-11	근저당 지상권	
76	김제시 마산리	466-6	유지	7,055.0	4,991.0	신상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423동 1601호(당산동 5가 당산 삼성래미안)				
77	김제시 마산리	466-17	유지	575.0	346.0	국(국토교 통부)					
78	김제시 마산리	466-18	유지	7,528.0	2,200.0	신상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423동 1601호(당산동 5가 당산 삼성래미안)				
79	김제시 마산리	466-32	유지	494.0	306.0	국(국토교 통부)					
80	김제시 마산리	466-33	도로	648.0	618.0	김제시					
81	김제시 마산리	466-34	도로	4,130.0	2,496.0	김제시					
82	김제시 마산리	467-1	도로	4,919.0	171.0	국(국토교 통부)					
83	김제시 마산리	223-2	답	4,382.0	108.0	나재훈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마산길 100	전라북도 주신동조합 성용조합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302-11	근저당 지상권	
84	김제시 마산리	471-8	구거	28,245.0	4,342.0	국(농림축 산식품부)					
85	김제시 마산리	466-35	유지	1,243.0	3.8	한국농어촌 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86	김제시 영상리	614-0	구거	20,893.0	3,558.0	국(농림축 산식품부)					
87	김제시 석담리	677-0	답	2,149.1	2,149.0	장성란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농원3길 7				
88	김제시 석담리	678-0	답	5,420.1	345.0	이희조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석담1길 58-15	백구농동 조합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변영로 2572	근저당 권	
89	김제시 마산리	295-3	하천	1,980.0	478.0	국(농림축 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 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90	김제시 마산리	295-2	하 천	526.0	51.0	국(기획재 정부)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7호

부안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창군 부안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부안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사업명 : 부안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고창군 부안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수리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농지 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336ha
5. 사업개요 : 비상수문 3개소
 - 상암제 : B × H × 련 = 1.5m × 1.0m × 1련
 - 원당제 : B × H × 련 = 2.0m × 1.5m × 1련
 - 수동제 : B × H × 련 = 2.0m × 1.5m × 1련
6. 사업기간 : 2023. 07 ~ 2023. 12. (1개년)
7. 총사업비 : 693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 063-560-154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8호

심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고창군 부안면 일원에서 시행 예정인 심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내용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사업명 : 심원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위치 : 고창군 아산면, 고수면 일원
3. 사업목적 :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수리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농지 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4. 수혜면적 : 851ha
5. 사업개요 : 비상수문 2개소
 - 계산제 : $B \times H \times \text{런} = 2.0\text{m} \times 2.5\text{m} \times 2\text{런}$
 - 평지제 : $B \times H \times \text{런} = 2.5\text{m} \times 2.0\text{m} \times 1\text{런}$
6. 사업기간 : 2023. 07 ~ 2023. 12. (1개년)
7. 총사업비 : 792백만원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
9. 시행계획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전화 063-560-1543)
10. 수용되거나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세목 : 해당없음

전라북도 고시 제2023-229호

군산2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군산2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I. 개발계획(변경없음)

II.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군산2국가산업단지 휴스틸 부지 진출입로 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변경)

- 시행자 : 주식회사 휴스틸
- 주 소 : (기정)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6-4
(변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4층(대치동, 신안빌딩)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사업의 목적
 -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주식회사 휴스틸)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도로) 설치
- 사업의 개요
 -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계	50,458,513	50,458,513	-	100	
육 지	15,773,513	15,773,513	-	31.26	
전용공업용지	9,373,364.2	9,373,364.2	-	18.58	
공장용지	7,077,875.9	7,077,875.9	-	14.03	
폐기물처리장	336,016.5	336,016.5	-	0.67	
발전소	330,612.6	330,612.6	-	0.66	
항만시설 보호지구	1,525,758.0	1,525,758.0	-	3.02	
열병합발전소	99,100.9	99,100.9	-	0.20	
변전소	4,000.3	4,000.3	-	0.01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일반공업용지	1,083,006.9	1,083,006.9	-	2.15	
공장용지	1,083,006.9	1,083,006.9	-	2.15	
준공업용지	565,053.9	565,053.9	-	1.12	
임해업무단지	263,803.0	263,803.0	-	0.52	
유통기지	37,966.7	37,966.7	-	0.08	
공공지원시설	102,590.1	102,590.1	-	0.20	
생산지원시설	150,694.1	150,694.1	-	0.30	
후생복지시설	10,000.0	10,000.0	-	0.02	
상업용지	173,366.9	173,366.9	-	0.34	
주거용지	429,721.4	429,721.4	-	0.85	
공동주택용지	197,522.5	197,522.5	-	0.39	
단독주택용지	228,652.4	228,652.4	-	0.45	
근린생활시설용지	3,546.5	3,546.5	-	0.01	
기타공공시설용지	4,148,999.7	4,148,999.7	-	8.22	
도로	1,706,405.5	1,706,405.5	-	3.38	
공원	1,273,980.2	1,273,980.2	-	2.53	
녹지	309,443.8	309,443.8	-	0.61	
유수지	518,429.9	518,429.9	-	1.03	
학교	73,039.8	73,039.8	-	0.14	
기타	267,700.5	267,700.5	-	0.53	
호안	46,028.5	46,028.5	-	0.09	
배수지	43,918.7	43,918.7	-	0.09	
공공공지	32,548.8	32,548.8	-	0.06	
우수펌프장	17,024.6	17,024.6	-	0.03	
폐수종말처리장	98,239.0	98,239.0	-	0.19	
생활용수가압장	371.0	371.0	-	0.00	
주차장	10,497.3	10,497.3	-	0.02	
종교시설	3,086.3	3,086.3	-	0.01	
공공청사	5,967.8	5,967.8	-	0.01	
통신시설	1,399.3	1,399.3	-	0.0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619.2	8,619.2	-	0.02	
해 면 (공유수면)	34,685,000.0	34,685,000.0		68.74	

-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1) 도로, 철도, 항만계획 : 변경없음
- 2) 용수, 하수, 배수시설계획 : 변경없음
- 3) 공원, 녹지계획 : 변경없음

- 4) 에너지공급시설계획 : 변경없음
- 5) 통신시설계획 : 변경없음
- 6) 폐기물처리계획 : 변경없음
- 7) 유통업무설비지구 : 변경없음
- 8) 항만시설보호지구 : 변경없음
- 9) 공공공지계획 : 변경없음
- 10) 공공청사계획 : 변경없음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34번지
- 나. 면 적

- 산단면적 : 50,458,513㎡(변경없음)
- 금회 사업면적(변경)
 - (기정) 진출입로 개설 2개 노선 875.8㎡
 - (변경) 진출입로 개설 3개 노선 2,675.8㎡

5.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변경)

- 시행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
- 시행기간(변경)
 - (기정) 실시계획 변경승인일로부터 ~ 2023.5.31
 - (변경) 실시계획 변경승인일로부터 ~ 2024.4.30

6. 도시관리 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50,458,513	-	50,458,513	100.0		
육 지	합 계	15,773,513	-	15,773,513	31.3		
	주거지역	소 계	772,258	-	772,258	1.6	
		제2종일반주거지역	496,304	-	496,304	1.0	
		제3종일반주거지역	275,954	-	275,954	0.6	
	상업지역	소 계	360,372	-	360,372	0.7	
		일반상업지역	360,372	-	360,372	0.7	
	공업지역	소 계	12,549,480	-	12,549,480	24.9	
		전용공업지역	10,627,901	-	10,627,901	21.1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2.4	
		준공업지역	706,799	-	706,799	1.4	
	녹지지역	소 계	2,091,403	-	2,091,403	4.1	
자연녹지지역		2,091,403	-	2,091,403	4.1		
미 지 정 (해 면)		34,685,000	-	34,685,000	68.7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 장 (m)			면 적 (㎡)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76,614	-	76,614	1,713,100.4	-	1,713,100.4	
광로 소계				8,545		8,545	399,950		399,950	
기정	광로	2	50~60	5,740	-	5,740	287,750.0	-	287,750.0	
기정	광로	3	40	2,805	-	2,805	112,200.0	-	112,200.0	
대로 소계				21,117		21,117	632,025		632,025	
기정	대로	1	35	7,301	-	7,301	255,535.0	-	255,535.0	
기정	대로	2	30	6,068	-	6,068	182,040.0	-	182,040.0	
기정	대로	3	25	7,748	-	7,748	194,450.0	-	194,450.0	
중로 소계				34,267		34,267	579,718.7		579,718.7	
기정	중로	1	20	13,630	-	13,630	272,600.0	-	272,600.0	
기정	중로	2	15~17	13,950	-	13,950	215,510.0	-	215,510.0	
변경	중로	3	12~14	6,687	-	6,687	91,608.7	-	91,608.7	
소로 소계				12,685		12,685	101,406.7		101,406.7	
기정	소로	1	11	137	-	137	1,532.0	-	1,532.0	
기정	소로	2	8	12,273	-	12,273	98,194.7	-	98,194.7	
기정	소로	3	6~7	275	-	275	1,680.0	-	1,680.0	

▪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 계					76,704							
기정	광로	2	2	50	주간선	2,865	광로2-6중점	비응항	일반		건고37 (76.3.27)	
기정	광로	2	6	50	주간선	2,250	13호 공원	광로2-4시점	일반		건고37 (76.3.27)	
기정	광로	2	7	50	주간선	535	광로2-6	광로2-5시점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광로	2	8	60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2	9	55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기정	광로	2	10	60	주간선	30	광로3-1	공장용지	일반			
변경	광로	2	10	60	주간선	30	광로 3-1	비응도동 36-4	일반			
기정	광로	3	1	40	주간선	2,805	광로2-4	대로1-4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1	17	35	주간선	2,763	대로1-15	대로1-2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1	20	35	주간선	903	대로2-16	대로1-16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1	21	35	주간선	2,367	광로3-1	대로2-16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1	22	35	주간선	1,268	대로1-17	비응도동 4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2	12	30	보조간선	635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2	13	30	보조간선	162	대로1-17	대로2-17	일반		건고80 (94.3.1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5	30	보조간선	620	대로2-16	대로3-23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6	30	보조간선	922	광로2-6	대로2-15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7	30	보조간선	395	중로1-41	중로1-42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8	30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19	30	보조간선	1,023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20	30	보조간선	1,024	광로3-1	소로2-494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2	21	30	보조간선	666	대로3-18	대로2-20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16	25	보조간선	954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3	17	25	보조간선	496	대로3-23	군산국가산단 지구계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3	18	25	보조간선	773	대로2-21	중로1-56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대로	3	20	25	보조간선	764	광로3-1	대로2-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1	25	보조간선	1,831	광로3-1	대로3-23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2	25	보조간선	631	대로1-21	대로3-23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3	25	보조간선	1,248	대로3-29	군산국가산단 지구계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대로	3	26	25	보조간선	1,051	대로1-17	대로3-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37	20	집산도로	401	대로2-12	대로3-17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38	20	집산도로	309	대로3-23	중로1-37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39	20	집산도로	641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0	20	집산도로	641	대로3-23	중로1-42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1	20	집산도로	570	대로2-17	중로1-68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2	20	집산도로	882	군산국가 산단지구계 대로3-25	오식도공원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3	20	집산도로	520	대로2-12	중로1-39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4	20	집산도로	317	대로2-15	중로1-3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5	20	집산도로	1,282	대로2-16	중로1-46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6	20	집산도로	631	광로2-6	중로1-34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47	20	집산도로	459	대로1-20	중로1-45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48	20	집산도로	518	대로2-16	대로3-16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49	20	집산도로	406	광로2-6	중로1-45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0	20	집산도로	631	대로2-21	대로3-2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51	20	집산도로	985	광로2-4	대로1-2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2	20	집산도로	645	대로2-19	중로1-51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3	20	집산도로	505	대로3-16	중로1-51	일반		건고80 (94.3.1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4	20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9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5	20	집산도로	649	대로2-20	대로3-20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6	20	집산도로	1,076	중로2-107	대로3-18	일반		건고80 (94.3.18)	
기정	중로	1	57	20	집산도로	137	대로1-17	중로1-41	일반		건고742 (91.12.5)	
기정	중로	1	68	20	집산도로	398	중로1-42	중로1-4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1	69	20	집산도로	398	중로1-42	중로1-4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42	15	집산도로	56	오식도동 765도	오식도동 77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3	15	집산도로	461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90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4	15	집산도로	568	오식도동 768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5	15	집산도로	553	오식도동 708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6	15	집산도로	591	오식도동 764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7	15	집산도로	500	오식도동 765도	오식도동 70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8	15	집산도로	500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3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2	49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0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1	15	집산도로	458	대로1-20	중로1-45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2	17	집산도로	47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3	17	집산도로	49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4	17	집산도로	492	대로3-26	중로3-38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55	17	집산도로	788	대로3-26	오식도동 514-6차	일반		'03.8.18	
기정	중로	2	91	17	집산도로	409	중로2-55	중로2-92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2	17	집산도로	477	대로3-26	중로3-37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3	15	집산도로	303	광로2-6	대로2-1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4	15	집산도로	143	중로2-93	중로2-95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5	15	집산도로	97	대로2-16	중로2-93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6	15	집산도로	262	대로2-16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7	15	집산도로	150	중로2-96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8	15	집산도로	40	광로2-4	중로2-99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99	15	집산도로	517	대로2-16	대로3-1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0	15	집산도로	405	대로3-16	중로2-96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1	15	집산도로	103	광로2-4	중로2-100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2	15	집산도로	506	대로3-16	중로1-5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3	15	집산도로	506	대로3-16	중로1-51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4	15	집산도로	103	광로2-4	중로2-102	일반		'01.12.28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05	15	집산도로	645	대로2-18	중로1-50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6	15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8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07	15	집산도로	500	중로1-56	남방파제	일반		'01.12.28	
기정	중로	2	135	15	집산도로	1,308	대로2-1 (비용관광지)	비용도공원	일반		'10.05.20	
기정	중로	3	35	12	집산도로	341	중로1-48	중로2-100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6	12	집산도로	372	중로1-53	중로2-102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7	14	집산도로	480	중로2-92	중로2-55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8	14	집산도로	651	중로2-53	중로2-54	일반		'01.12.8	
기정	중로	3	39	14	집산도로	308	중로1-44	대로3-23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0	14	집산도로	459	중로1-45	대로1-20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1	14	집산도로	517	대로3-22	대로2-15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2	14	집산도로	501	대로1-21	중로3-41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3	14	집산도로	252	대로3-22	중로3-42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4	14	집산도로	252	중로3-42	대로2-15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45	14	집산도로	629	광로3-1	대로2-18	일반		'07.6.29	
기정	중로	3	65	14	집산도로	482	중로1-55	광로3-1	일반		익산청86 (07.5.9)	
기정	중로	3	66	14	집산도로	465.7	대로1-21	중로1-48	일반		익산청73 (08.3.12)	
기정	중로	3	67	14	집산도로	647.3	중로1-49	중로1-46	일반		익산청73 (08.3.12)	
기정	중로	3	68	12	집산도로	270	중로1-39	대로2-17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중로	3	152	14	국지도로	30	비용도동 광로3-1	비용도동 36-19	일반		전북도-307 (22.12.9)	
변경	중로	3	152	14	국지도로	30	비용도동 광로 3-1	비용도동 36-4	일반		전북도307 (22.12.9)	
기정	중로	3	153	14	국지도로	30	비용도동 광로3-1	비용도동 36-19	일반		전북도-307 (22.12.9)	
변경	중로	3	153	14	국지도로	30	비용도동 광로 3-1	비용도동 36-4	일반		전북도307 (22.12.9)	
기정	소로	1	1	11	국지도로	90	대로3-21	중로3-1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소로	1	2	11	국지도로	47	중로3-1	공공지원시설	일반		익산청 '13.7.2	
기정	소로	2	398	8	국지도로	492	대로3-21	오식공원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399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4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0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1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2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3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4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05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0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8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09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0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1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2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20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4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4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34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5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0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6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7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8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07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19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420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1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21도	오식도동 73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2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06도	오식도동 73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38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4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5	8	국지도로	111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2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39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28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29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0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1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1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38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2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6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3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40도	오식도동 749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4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5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3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41도	일반		건고91 (68.7.2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37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8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39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52도	오식도동 763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0	8	국지도로	209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4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1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68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42	8	국지도로	114	오식도동 769도	오식도동 771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43	8	국지도로	312	오식도동 770도	오식도동 775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4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71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5	8	국지도로	114	오식도동 771도	오식도동 774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6	8	국지도로	65	오식도동 773도	오식도동 77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47	8	국지도로	138	오식도동 780도	오식도동 778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8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49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0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77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1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2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3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1도	오식도동 803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4	8	국지도로	209	오식도동 776도	오식도동 78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5	8	국지도로	102	오식도동 780도	오식도동 787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56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7	8	국지도로	110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1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8	8	국지도로	148	오식도동 775도	오식도동 79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59	8	국지도로	132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89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0	8	국지도로	164	오식도동 775도	오식도동 79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1	8	국지도로	51	오식도동 788도	오식도동 789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2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63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464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5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702도	일반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66	8	국지도로	108	오식도동 792도	오식도동 802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7	8	국지도로	312	오식도동 790도	오식도동 780도	일반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8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802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69	8	도로	30	오식도동 737도	오식도동 739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0	8	도로	30	오식도동 764도	오식도동 763도	보행자 전용		'91.12.7	
기정	소로	2	471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803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472	8	도로	30	오식도동 766도	오식도동 702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473	8	도로	29	오식도동 790도	오식도동 789도	보행자 전용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2	493	8	국지도로	639	대로1-17	중로1-42	일반		'98.6.30	
기정	소로	2	494	8	국지도로	942	대로2-20	소로2-495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495	8	국지도로	1008	중로1-56	소로2-494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496	8	국지도로	100	중로3-37	오식도동 503공	일반		'01.12.28	
기정	소로	2	762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08도 중로2-45	오식도동 709도 공공공지1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3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32도 중로2-45	오식도동 733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4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49도 중로2-45	오식도동 750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5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60도 중로2-45	오식도동 761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6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68도 중로2-44	오식도동 767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7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73도 중로2-44	오식도동 772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8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78도 중로2-44	오식도동 777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769	8	국지도로	45	오식도동 794도	오식도동 793도	일반		'91.12.7	
기정	소로	2	979	8	국지도로	30	광로3-1	공장용지	공장 진입		군산고55 (13.4.26)	
기정	소로	2	1121	8	국지도로	96	비응도동 소로 2-494	비응도동 38	일반		전북고-124 (23.5.12)	
기정	소로	3	485	6	국지도로	100	대로3-21	중로2-55	보행자 전용		군산고55 (13.4.26)	
기정	소로	3	486	6	국지도로	145	광로3-1	중로3-38	보행자 전용		'01.12.28	
기정	소로	3	735	7	국지도로	30	광로1-1	소방서	일반		'01.12.28	

▪ 내초도의 지구외 연결도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3	50	주간선	119	광로2-2	군산국가산단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94.3.1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2-10	광로 2-10	종점 변경	공장용지 진출입도로 개설
중로 3-152	중로 3-152	종점 변경	공장용지 진출입도로 개설
중로 3-153	중로 3-153	종점 변경	공장용지 진출입도로 개설

2) 공원(변경없음)

▪ 공원 총괄표

구분	구분	행정구역(km ²)					시가화구역(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6	1.32	-	5	1.32	16	1.32	-	16	1.32	
기정	근린공원	10	1.29	-	10	1.29	10	1.29	-	10	1.29	
기정	어린이공원	5	0.01	-	5	0.01	5	0.01	-	5	0.01	
기정	묘지공원	1	0.02	-	1	0.02	1	0.02	-	1	0.02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1,323,751.9	-	1,323,751.9		
기정	1	비용도공원	근린공원	지구남측 비용도 서측	179,640.9	-	179,640.9	'91.12.7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기정	2	가도공원	근린공원	남측중앙부 광로 2-2호선변	142,313.0	-	142,313.0	'91.12.7	
기정	4	오식공원	근린공원	지구중앙부 오식도내	480,030.0	-	480,030.0	'91.12.7	
기정	6	내초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 내초도 남측	143,816.3	-	143,816.3	'91.12.7	
기정	7	오식묘지공원	묘지공원	지구 중앙부 오식도내	20,000.3	-	20,000.3	'94.3.18	
기정	9	분말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700공	103,590.9	-	103,590.9	'91.12.7	
기정	10	중앙1호공원	근린공원	자유무역지역남측 대로3-4호선변	18,897.9	-	18,897.9	'02.1.3	
기정	11	중앙2호공원	근린공원	지구중앙부 대로 2-7호선변	16,926.2	-	16,926.2	'02.1.3	
기정	23	요죽공원	근린공원	오식도동661공	51,596.6	-	51,596.6	'91.12.7	
기정	24	생말공원	근린공원	지구동측 생말 일원	108,650.4	-	108,650.4	'91.12.7	
기정	31	새만금비용공원	근린공원	새만금방조제입구, 광로2-4호선	48,993.0	-	48,993.0	'10.05.20	
기정	48	제1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805-2공	2,008.8	-	2,008.8	'91.12.7	
기정	49	제2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806-4공	1,999.6	-	1,999.6	'91.12.7	
기정	50	제3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615-2공, 615-3대	1,821.8	-	1,821.8	'91.12.7	
기정	51	제4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634-5공	1,619.8	-	1,619.8	'91.12.7	
기정	52	제5호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오식도동677-4공, 677-3대	1,846.4	-	1,846.4	'91.12.7	

* 신설 소로 2-1121호선(778.7m²)은 비용도공원(1호 공원)에 중복결정사항임

3)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1,560.1	-	261,560.1		
기정	1	철도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임항부지와 발전소를 있는 철도변	75,797.8	-	75,797.8	'91.12.7	
기정	2	호안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서측호안변	31,679.4	-	31,679.4	'91.12.7	
기정	3	유수지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유수지변	53,102.1	-	53,102.1	'91.12.7	
기정	6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 1-13호선변	28,419.3	-	28,419.3	'91.12.7	
기정	7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중로 1-42호선변	2,787.1	-	2,787.1	'98.7.6	
기정	9	오식도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 북동측	8,379.2	-	8,379.2	'02.1.3	
기정	10	폐수처리장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수처리장 주변	10,387.9	-	10,387.9	'03.8.21	
기정	30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동 805-1잡, 806-1잡	22,579.5	-	22,579.5	'91.12.7	
기정	31	도로변 완충녹지	완충녹지	오식도동 652-2잡, 653잡, 654잡, 655잡, 685잡, 686잡, 697잡, 698잡, 699잡	28,427.8	-	28,427.8	'91.12.7	

4) 배수지시설(변경없음)

▪ 배수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289.7	-	44,289.7		
기정	1	생활용수 가압장	중로1-4호선변 진입로임구 남측	371	-	371	'98.7.6	
기정	4	배수지	오식도동 701수,736도	43,918.7	-	43,918.7	'91.12.7	

5) 하수도시설(변경없음)

▪ 하수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5,263.6	-	115,263.6		
기정	1	폐수종말처리장	비응도북측, 유수지동측	98,239.0	-	98,239.0	'91.12.7	
기정	2	우수펌프장	유수지 남측	17,024.6	-	17,024.6	'91.12.7	

6) 유수지시설(변경없음)

▪ 유수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유수시설	대로3-4호선 종점부에서 지구서측 비응도	518,429.9	-	518,429.9	'91.12.7	

7) 폐기물처리시설(변경없음)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유수지 동측 및 발전소 북측	336,016.5	-	336,016.5	'91.12.7	

8) 철도시설(변경없음)

▪ 철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km)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계							7,114			
기정	1	철도	일반철도	군산국가산단 철도연결부	공장용지		3,865	-	'91.12.7	
기정	2	철도	일반철도	군산지구 철-2	지구남측 구역계		3,249	-	'91.12.7	

9) 항만시설(변경없음)

▪ 항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호안	호안	북서측 구역계~비용도	2,557	-	2,557	'91.12.7	

10) 유통업무설비시설(변경없음)

▪ 유통업무설비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통업무 설비시설	자유무역지역내 대3-9호선 좌측	37,966.7	-	37,966.7	'91.12.7	

11) 에너지공급시설(변경없음)

▪ 에너지공급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48,457.9	-	448,457.9		
기정	1	발전소	지구서측 비용도공원동측	330,613	-	330,613	'91.12.7	
기정	2	열병합발전소	대로1-3호선변 발전소북측	99,100.9	-	99,100.9	'91.12.7	
기정	3	변전소	광도3-1호선변 중간부	4,000	-	4,000	'02.1.3	
기정	5	풍력발전기	서측호안변 완충녹지(녹-2)	720	-	720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기정	17	풍력발전시설	비용도동 21번지	14,024	-	14,024		

12) 학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73,039.8	-	73,039.8		
기정	1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 615-1대	600.7	-	600.7	'91.12.7	
기정	2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 634-6대	599.9	-	599.9	'91.12.7	
기정	3	학교	유치원	오식도동 677-5대	601.0	-	601.0	'91.12.7	
기정	8	학교	중학교	오식도동 641학	14,834.6	-	14,834.6	'91.12.7	
기정	24	학교	고등학교	오식도동 631학	15,185.8	-	15,185.8	'91.12.7	
기정	29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 805-5학	12,003.6	-	12,003.6	'91.12.7	
기정	30	학교	초등학교	오식도동 694학	12,273.2	-	12,273.2	'91.12.7	
기정	31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 515-4번지	4,477.0		4,477.0	'13.7.2	
기정	32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 515-4번지	8,737.0		8,737.0	'13.7.2	
기정	33	학교	대학교	오식도동 515번지	3,727.0		3,727.0	'13.7.2	

13) 연구시설(변경없음)

▪ 연구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연구시설	오식도동 515	3,727.0	-	3,727.0	'13.7.2	

14)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67.8	-	5,967.8		
기정	4	공공청사	소방서	광로 2-4호선 및 완충녹지번	3,967	-	3,967	국2010-36 '10.05.20	
기정	7	공공청사	공공청사	오식도동 624-11대, 624-12대, 624-13대	2,000.8	-	2,000.8	'91.12.7	

15)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0,497.3	-	10,497.3		
기정	1	주차장	오식도동 818-5차	1,650.7	-	1,650.7	'01.12.28	
기정	4	주차장	오식도동 891차	1,654.3	-	1,654.3	'01.12.28	
기정	5	주차장	오식도동 909차	1,654.0	-	1,654.0	'01.12.28	
기정	6	주차장	오식도동 943차	1,653.2	-	1,653.2	'01.12.28	
기정	10	주차장	오식도동 620-5잡	1,560.6	-	1,560.6	'91.12.7	
기정	11	주차장	오식도동 671-1잡	1,561.5	-	1,561.5	'91.12.7	
기정	12	주차장	오식도동 515-4번지	763.0	-	763.0	'13.7.2	

16) 통신시설(변경없음)

▪ 통신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99.3	-	1,399.3		
기정	1	통신시설	오식공원내	399.2	-	399.2	'91.12.7	
기정	2	통신시설	오식도동 652-1대	1,000.1	-	1,000.1	'98.7.6	

17)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548.8	-	32,548.8		
기정	1	공공공지	오식도동 709도, 733도, 750도, 761도, 767도, 772도, 777도, 793도	10,175.4	-	10,175.4	'94.3.18	
기정	2	공공공지	오식도동 817-1도, 819-1도	3,035.5	-	3,035.5	'01.12.28	
기정	3	공공공지	오식도동 886도, 914도, 924도, 972도, 981도, 990도, 995도, 1001도, 1006도	19,337.9	-	19,337.9	'04.6.7	

7.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 (<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

전라북도 고시 제2023-231호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전라북도지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정읍시장
 - 나.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2. 사업목적 : 생활오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666-1
 - 나. 면 적 : 305.4m²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가. 명 칭 : 정읍 봉양 공공하수처리시설
 - 나. 용 량 : 25m³/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가. 예정배수구역 : 0.07km²
 -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 0.07km²
6. 사업시행기간 : 2022 ~ 2024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정읍시 상하수도사업소(063-539-648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공유지분)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 류	
정읍시 입암면 봉양리	666-1	답	305.4	305.4	정읍시 충청로 234	정읍시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7호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전부개정, 시행 2023.4.27.)에 근거하여 조례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신설하여 동물의 불가피한 유기 예방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그 밖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신설)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전라북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
 -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신설(안 제13조의2제1호~제5호)
 - (신설)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파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
 - 다. 동물보호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14조, 15조~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 나. 예산조치 : 예산과 협의(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 등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여성가족과
- 라. 입법예고 : 2023. 7. 21. ~ 2023. 8. 10.(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 8.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동물방역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동물방역과 (전화 : 063-280-3406, FAX : 063-280-2639, 이메일 ymhong1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5.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붙임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5조의2를 제6조의2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3조의2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중전의 제3조)제2항 중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한다”를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을 “(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7조”를 “시행규칙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동물 등록”을 각각 “동물등록”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5항 중 “시행규칙 제15조”를 “시행규칙 제21조”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7조”를 “시행규칙 제18조”로,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기동물보호담당자”를 “유기동물보호 담당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6조제1항제3호”를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명예동물보호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양 받은”을 “분양받은”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2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2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3조의2(중전의 제12조의2) 제1항 중 “등 불가피한”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도지사”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4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해당동물”을 “해당 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 및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해당동물”을 “해당 동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

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을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으로,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를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제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조(동물의 등록)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u>통보하여야한다.</u></p> <p>③ (생 략)</p> <p>④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등록대행자가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u>동물보호관리시스템</u>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4조(동물 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및 <u>시행규칙 제7조</u>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p>	<p>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통보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4조(동물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한다.)</u> ----- ----- ----- <u>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동물보호정보시스템</u> ----- ----- -----</p> <p>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 ----- <u>시행규칙 제9</u> ----- -----</p>

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1. 2.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동물 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동물 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등록된 동물의 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생 략)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 ④ (생 략)

⑤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법인·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

⑥ (생 략)

제7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생 략)

제9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

1. 2. (현행과 같음)

② ----- 동물등록 -----

③ ----- 동물등록 -----

제6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

② -----
----- 동물보호정보시스템 -----

제6조의2 (현행 제5조의2와 같음)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시행규칙 제21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
시행규칙 제18 ----- 제19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 제9조제1항---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동물 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 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③ (생략)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1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분양)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⑥ (생략)

-----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 각호-----
----- 유기동물보호 담당자-----
-----.

1. 2.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④ ----- 법 제38조제1항-----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분양) ① -----
- 제9조-----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4조-----
-----.

④ ----- 제10조-----

-----.

⑤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 3. 기증 또는 분양 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⑤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보호조치한 동물을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제12조의2(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⑦ -----

-----.

- 1. 영 제6조-----
- 2. -----
---- 명예동물보호관
- 3. ----- 분양-----

제13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영 제6조-----

--.

③ -----
----- 시행규칙 제26제2항-----
--.

④ -----

----- 제12조-----.

⑤ 영 제6조-----

-----.

제13조의2(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
----- 경우에 ----- 도
지사와 시장·군수-----.

-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는 경우
-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략)

제13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생략)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도 및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1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

----- 제12조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 -----

-----.

③ ----- 제12조제4항 -----
----- 해당 동물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제7조 -----

-----.

② -----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 -----
----- 영 제6조 -----
-----.

<p>③ (생 략)</p> <p><u>제15조(수수료) ①</u> 동물등록 수수료는 <u>시행규칙 제48조 별표 12</u>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p> <p>② (생 략)</p> <p>1. 2. (생 략)</p> <p><u>3.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다만, 3마리부터 적용된다)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u></p> <p><u>제16조(권한의 위임)</u> 도지사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하여 <u>제6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u>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16조(수수료) ①</u> ----- <u>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u>제17조(권한의 위임)</u> ----- ----- <u>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8조제3항</u>----- ----- <u>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제2항</u>----- ---</p>
---	---

붙임 1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 2022.4.26.)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4.27.)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경우 그 청구비용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미첨부 근거규정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일부 개정에 따라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 의안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상 비용은 소관부서의 동물보호 관련 계속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물보호사업(자체사업),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사업(국비사업)

3. 작성자

농생명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수의주사보 홍유미 (280-3406)

참고**조례 일부개정 전문(안)****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 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를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보호조치”란 유실·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함을 말한다.
5. “동물보호센터”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7. “무선식별장치”란 개체별 식별번호가 내장되어 있는 체내 삽입형 마이크로칩 또는 체외부착형 인식용 목걸이(전자태그)를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시장·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가 등록사항을 통보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등록대행자가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군에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면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등록된 동물의 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 공원
-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8.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7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해당 시·군의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법인·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삭제>

제8조(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①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기동물의 포획) ① 도지사는 유기동물 또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보호센

터의 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 또는 공수의로 하여금 법 제37조에 따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④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시장·군수는 유기동물의 적정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기증·분양)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4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납입사실을 확인 후 인계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기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법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분양하고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고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기증·분양할 수 있는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

제13조(괴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유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에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보호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6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소유권이 도지사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할 때는 해당 단체가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가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보호조치한 동물을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한다.

제13조의2(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2. 소유자등이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3.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 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소유자등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도지사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와 적정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유기·피학대동물 및 사육포기 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경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요경비의 내역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의 장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제1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유기동물보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16조(수수료) ① 동물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14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의 청구 절차는 시장·군수가 정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장애인 보조견

2. 50퍼센트 감면

가. 유기견 및 피학대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나.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다.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또는 분실로 동물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

라.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마.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단, 3마리부터 적용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과 관리 감독을 위하여 제7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8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 이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 및 안건 제척사유 규정 마련 등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구체적 명시(안 제3조제2항 단서신설)
용역과제 심의 제외 대상을 기존 법령 및 국비 보조사업에 투자심사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 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규정 신설(안 제10조 신설)
과제선정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제척·회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해임 및 해촉규정 신설(안 제11조 신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해촉 규정 마련
- 라.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안 제16조제2항 신설)
위원회가 용역평가 결과서 검토 후에 불량한 연구자에게 향후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을 부과 규정 명시
- 마.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안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기존 공개, 비공개에서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며, 비공개 시 사유 및 공개전환시점 게재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기업애로해소지원단, 감사관, 인권담당관,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와 협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7. 21. ~ 2023. 8.10.(20일간)

2) 비용추계서 :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0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예산과 재정투자심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예산과
(전화 063-280-2072 / FAX 063-280-21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 방문·도 홈페이지 어느방법이든 가능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예산과 재정투자심사팀(전화 063-280-2072)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련 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4.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문(안) 1부.

붙임 1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조례 제 호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중”을 “사무 중”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국비보조사업도”를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로, “필요성 인정시 심의 할 수 있다”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없을때”를 “없을 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를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7조를 제20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3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1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중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역사업안을”을 “용역의 과업지시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호”를 “제4호”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의2)제1항 중 “용역시행부서”를 “용역 시행부서”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1조)의 제목 “(용역상황의 점검)”을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용역진행상황”을 “용역 진행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계획서상”을 “용역 과업지시서상”으로,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를 “연구자에게”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의2)의 제목 “(용역 결과의 평가)”를 “(용역결과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6조(중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용역계약”을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7조)제1항 중 “회의시마다”를 “회의 때”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용역 결과물 평가결과서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용역실무자	
연구방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연구윤리 점검 결과 (위조, 변조, 표절 등)			
6. 연구자 점검 결과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구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확인	성명	(서명)	(서명)
평가	개최일자	장소	
보고회	참석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u>사무중</u>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용역업무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사무 중</u>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u>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한 용역과제는 제외한다.</u>	제2조(정의) ----- -----. 1. ----- ----- ----- ----- ----- ----- ----- -----
2. ~ 5. (생략)	1. ----- ----- ----- ----- ----- ----- ----- ----- <u><단서 삭제></u>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②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사항에 한 한다. <단서 신설>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①----- ----- <u>변</u> 위-----. ②----- ----- . <u>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국비보조사업도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 제시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성 인정시 심의 할 수 있다.	3. <u>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u> ----- ----- <u>심의가 필요하다</u> <u>고 인정하는 용역</u>
③용역과제 평가는 제2항의 제1호에 한 한다. 다만,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제외한다.	----- ----- <u><삭 제></u>
제5조(구성) ① ~ ⑤ (생략)	제5조(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시 매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삭제>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없을 때-----
-----.

제8조(회의) ①-----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 때, 위원장이 소집
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용역과제의 제출) ①도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사업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제1항 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용역실명제) ① 용역시행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용역과제를 제출할 때 실명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용역상황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용역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월 이하인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①-----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

1. ~ 5. (현행과 같음)

② --- 제4호-----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 시행부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 용역 진행상황-----

②----- 용역 과업지시서상----- 연구자에게 -----.

제15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생 략)

제12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생 략)

<신 설>

제13조 (생 략)

제15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용역계약 사항(용역의 목적·기간·방식 등),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계약사항, 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6조 (생 략)

제17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제20조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① (현행 제6항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8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 -----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 제2항제1호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 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20조(회의록 등) ① ----- 회의 때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수당 및 여비) -----
----- 범위 -----

제22조·제23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

붙임 2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전라북도의회 의원·전라북도의회 위원회·도지사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2. 미첨부 사유

- 금번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규정 및 안건 제척사유 규정 마련 등 구성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연구용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3. 작성자

- 예산과 지방행정서기 박수빈

붙임 4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전문안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사무 중** 용역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용역업무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지방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3.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4.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5.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 5. 1.>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 분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범위**에서 적용한다. <개정 2008. 7. 10., 2014. 10. 22., 2015. 5. 1.>

②용역과제 심의는 제2조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다음 사항에 한 한다. **다**만,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국비 보조사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사업은 제외한다.

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학술용역 <개정 2015. 5. 1.>
2. 용역비 5천만원 이상이거나 공사설계 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3.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용역비 축소 및 용역사업의

방향제시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③ 삭제

제4조(용역관리의 기본원칙) ①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중심으로 실시한다.

②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상호 연계하는 등 평가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도정 시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유치지원실장, 건설교통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9인 이내의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0. 7. 30., 2014. 10. 22., 2015. 5. 1., 2017. 1. 2., 2019. 12. 31., 2022. 10. 21.>

④위원회는 7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2022. 11. 4.>

⑥ 삭제

제6조(기능) ①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간사는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에 대해 전문기관 등의 사전 검토의견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용역과제가 있을 때 분기마다 실시하되,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집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5. 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용역과제의 제출) ①도지사는 용역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1. 용역사업의 필요성
2.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3. 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4.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개정 2015. 5. 1.>
5. 그 밖에 용역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5. 1.>

② 제1항제4호의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을 검토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

제13조(용역실명제) ① **용역 시행부서**의 공무원은 위원회에 용역과제를 제출할 때 실명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본부장, 과장·담당관,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5. 1.]

제14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과제담당관은 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용역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월 이하인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용역 과업지시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 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15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되, 용역 결과물과 연구자에 대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단순 반복적인 기술·전산·설문조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용역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용역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용역결과 등의 보고) ① 도지사는 용역사항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과 용역결과 및 사후관리 실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성과평가의 실시) 도지사는 자체점검결과 위원회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한 용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를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용역결과 등의 공개 및 활용) 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용역계약 사항(용역의 목적·기간·방식 등), 용역결과, 성과평가 결과서 및 활용상황을 지체 없이 전라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용역계약사항, 용역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5. 1.>

② 제1항에 따른 용역결과 등의 공개대상은 제3조제2항제1호에 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용역과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하며, 용역결과를 제출한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해당사업의 종료 시 및 2년 이상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평가결과 제출) 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 상황 및 최근 2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 후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5. 1.>

제20조(회의록 등) ① 위원장은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도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의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승인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5. 5. 1.>

제22조(비밀엄수) 용역과제의 심의·평가업무에 참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용역 결과물 평가결과서

연구 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용역실무자				
연구방식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연구기간	~ (개월)			
주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물의 활용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5. 연구윤리 점검 결과 (위조, 변조, 표절 등)						
6. 연구자 점검 결과 (계약을 이행할 때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구 분	평 가 위 원	과제담당관	담당자		
확 인	성 명	(서명)	(서명)	(서명)		
평 가	개최일자	장 소				
보고회	참석자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29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모집 과정에서 복수 추천,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유능한 리더 선정 필요
- 소방관서 개서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명칭 변경, 의용소방대 연합회별 관할소방서 변경사항 등을 정비

2. 주요내용

- 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절차 개정(안 제4조 별표2)
- 나. 소방서 신설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 명칭 변경(안 제2조 별표 1)

현행	개정
장수소방서 설천의용소방대 구천지역대	무주소방서 설천의용소방대 구천지역대

- 다. 임실·무주소방서 신설에 따른 시군연합회 관할소방서 변경(안 제6조 별표 3)

현행		개정	
관할 소방서	관할 구역	관할 소방서	관할 구역
전주완산소방서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임실소방서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장수소방서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무주소방서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의 : 법무행정과, 여성가족과, 감사관, 예산과, 기업애로해소지원단

라. 입법예고 :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20일간)

**4. 붙임 :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 및 선정절차)”를“(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절차)”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을 “제1항에 따라”로, “후보자 모집 및 투표 절차”를 “후보자 모집절차”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은 각각 다음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은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 및 선정절차)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에 대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심의대상 후보자 등록신청서·추천서</p> <p>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심의대상 후보자 등록신청서·추천서</p> <p>②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는 소속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연합회원의 투표로 선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과 도 및 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후보자 모집 및 투표 절차는 별표 2와 같다.</p>	<p>제4조(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및 모집절차) ① - ----- ----- --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추천서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 -----.</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② 제1항에 따라 ----- -----후보자 모집절차----- -----.</p>

[별표 1]

지역의용소방대 명칭 및 관할구역(제2조제1항 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전주덕진소방서 전주덕진의용소방대 조촌지역대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조촌동 일원
군산소방서 군산의용소방대 공설지역대	군산시 대명동(시장지역) 일원
군산소방서 옥도의용소방대 어청지역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일원
군산소방서 옥도의용소방대 개야지역대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 일원
군산소방서 옥도의용소방대 비안지역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일원
정읍소방서 정읍의용소방대 내장지역대	정읍시 내장동 일원
정읍소방서 신태인의용소방대 화호지역대	정읍시 신태인읍 화호리, 신태리, 청천리, 육리, 양피리 일원
정읍소방서 입암의용소방대 대흥지역대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접지리, 마석리, 단곡리, 왕십부락 일원
정읍소방서 고부의용소방대 관청지역대	정읍시 고부면 신흥리, 관청리, 용흥리, 강고리 일원
남원소방서 남원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	남원시 공설·용남시장
김제소방서 김제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	김제시 요촌동, 교동(시장지역) 일원
부안소방서 부안의용소방대 시장지역대	부안군 부안시장 일원
부안소방서 변산의용소방대 격포지역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원
무주소방서 설천의용소방대 구천지역대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일원

[별표 2]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대상 후보자 모집절차(제4조제2항 관련)

1. 대장 및 부대장

○ (공고기간)

- 대장, 부대장이 임기만료(공석 포함)인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일을 지정하여 10일간 후보자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소방서 홈페이지

○ (추천서 제출)

- 심의대상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서식에 따라 소속대 현원의 30%이상의 추천을 받아 심의 3일전까지 소방서장에게 추천서 제출

2. 도 및 시·군 연합회장

○ (공고기간)

- 도(시·군)연합회장이 임기만료(공석 포함)인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일을 지정하여 10일간 후보자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추천서 제출)

- 심의대상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서식에 따라 소속대 현원의 30%이상의 추천을 받아 심의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추천서 제출

[별표 3]

의용소방대 연합회별 명칭 및 관할구역(제6조 관련)

관할 소방서	명 칭	관할구역
전주덕진소방서	전주덕진의용소방대연합회	전주시 덕진구 일원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전주시 완산구 일원
임실소방서	임실의용소방대연합회	임실군 일원
군산소방서	군산의용소방대연합회	군산시 일원
익산소방서	익산의용소방대연합회	익산시 일원
정읍소방서	정읍의용소방대연합회	정읍시 일원
남원소방서	남원의용소방대연합회	남원시 일원
김제소방서	김제의용소방대연합회	김제시 일원
완주소방서	완주의용소방대연합회	완주군 일원
순창소방서	순창의용소방대연합회	순창군 일원
고창소방서	고창의용소방대연합회	고창군 일원
부안소방서	부안의용소방대연합회	부안군 일원
장수소방서	장수의용소방대연합회	장수군 일원
진안소방서	진안의용소방대연합회	진안군 일원
무주소방서	무주의용소방대연합회	무주군 일원

■ [별지 제1호서식]

의용소방대원 (부)대장 후보자 추천서

(부)대장 후보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근무경력)	직업	비고

상기인을 ○○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소속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추천 확인자 ○○ 119안전센터장 (서명)

○○소방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의용소방대원 연합회장 후보자 추천서

연합회장 후보자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근무경력)	직업	비고

상기인을 도 의용소방대연합회 (남성·여성)연합회장
또는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성·여성)연합회장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 . . .

추천인

소속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서명

추천 확인자 ○○ 소방서장 (직인)

또는 ○○ 119안전센터장 (서명)

전라북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3 - 30호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7월 2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위원회 출범(‘23.03.29)으로 삼락농정위원회가 폐지되었으며, 관련 삼락농정대상 조례를 민선 8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 위상에 맞도록 삼락농정대상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전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현행 삼락농정대상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 등: 법무행정과(행정규제심사)
 - 부패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아님
- 라.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마. 입법예고 : 2023. 7. 21. ~ 2023. 8. 11.(20일간)

4.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농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농업정책과 (전화 : 063-280-2635, FAX : 063-280-261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감사관실 원가감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3-280-2635)

4.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붙임

전라북도 규칙 제 호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3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고
(사단법인 K드론남원시연합회)

「민법」 제3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허가 번호 : 제2023-31호
2. 법인 명 : 사단법인 K드론남원시연합회
3. 소재지 :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142-1, 2층
4. 대표자 : 박정택
5. 허가연월일 : 2023. 07. 13.
6. 설립 목적 : 회원 간 드론 지식정보 공유 및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친목 도모 등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8호

비영리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수정 공고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법 인 명 : 재단법인 쌍백합 청소년육성회
2. 주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3. 대 표 자 : 김선태(1961.09.15.)
4. 허가번호 : 제2001-6450000-008-0004호
5. 주된사업
 - 인간존중과 봉사정신을 함양하는 청소년단체 활동 육성
 -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탁 운영
 - 청소년 지도와 상담 및 청소년 제반 관련 활동
6. 변경사항
 - 가.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7조(이사의 선임) 일부개정
7. 변경일자 : 2023. 07. 12.

재단법인 쌍백합 청소년육성회 정관변경 세부내용

현 행	개 정
제2장 임원	제2장 임원
<p>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u>이사 8인</u>(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p>제7조(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교구장(주교)으로 하고, 청소년교육국장(신부)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나머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후 주무관청에 사후 보고한다. 2) (생략) 	<p>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u>이사 9인</u>(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p>제7조(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장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교구장(주교)으로 하고, 청소년교육국장(신부)은 <u>당연직 이사(사무총장)</u>로 하며, 나머지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후 주무관청에 사후 보고한다. 2) (생략)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29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7. 21.

전라북도지사

□ 공 고 사 항

등록번호	단체의 명칭	대표자	사무소	주된 사업	등록일
제2023-1 전라북도-15호	전라북도 장기요양협회부	박경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2길 17-5, 301호	· 장기요양서비스 등 종사자 교육 · 노인복지정책 공청회, 출판 활동 등	2023. 7. 14.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35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공 고 사 항

1. 허가번호 : 제1994-184호
2. 법 인 명 : 사단법인 진안문화원
3. 소 재 지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군하리)
4. 대 표 자 : 우덕희
5. 설립목적 :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함.
6. 변경 허가사항

현행	개정안
<p>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u>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u> ② (생략)</p>	<p>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에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u>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그 수혜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u> ② (생략)</p>
<p>제12조(임원) 1~2 (생략) 3. <u>이사20인 (원장,부원장,당연직이사포함)</u> 4.(생략) 5. 신설</p>	<p>제12조(임원) 1~2 (현행과 같음) 3. <u>이사30인 이내 (원장,부원장,당연직이사포함)</u> 4.(현행과 같음) 5. <u>고문 전임 문화원장</u></p>
<p>제44조(본원의 해산) ① (생략)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u>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u></p>	<p>제44조(본원의 해산) ① (생략) ② 본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u>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u></p>

7. 변경 허가일자 : 2023. 7. 14.

전라북도 공고 제2023 - 1339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 공고
(사단법인 임실문화예술진흥회)**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임실문화예술진흥회
2. 소 재 지 : 전북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30-4
3. 대표자성명 : 진 남 근
4. 설 립 목 적 : 임실군 문화예술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 및 현대예술의 보급과 임실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친목은 물론 창작활동에 적극 육성·지원함으로써 임실군민의 문화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5. 허가구분 : 정관 변경(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6. 변경허가연월일 : 2023. 7. 10.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44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북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지사
2023년 7월 21일

공인의 등록

1. 공인 등록 사유 : 전라북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2. 공인 등록일 : 2023년 7월 21일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자치행정과	전라북도고향사랑기금출납원인	

전라북도 공고 제2023-1350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7. 21.

전라북도지사

1. 등록번호 : 제2022-1-전라북도-12호
2. 단체명칭 : 한국재해안전협회
3. 변경 내용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소재지 : (변경전) 전북 군산시 팔마로 124, 재진빌딩 201호 →
 - (변경후) 전북 군산시 신흥길 22, B동 108호
4. 주된 사업
 -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보급 및 지역사회 봉사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3-7호

재산등록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2023년 7월 21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 00 호
- ② 소 속

소 속	소재지	성명	공개구분	등록일자	비고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이규택	신규	'23. 4. 21.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양균의	퇴직	'23. 4. 20.	
군산시의회	군산시	유중삼	재등록	'23. 4. 5.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소속	권리번호		적위	원장	성명	이규액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가액 (산가대가액)		비고
본인명의 관계	재산의 종류					
▶ 토지(소계)						
배우자	답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리 254-9번지 1,085.00㎡ 중 239.00㎡		180,000 (180,000)		
경남	답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리 254-9번지 1,085.00㎡ 중 135.00㎡		50,000 (50,000)		
경남	임야	강원도 강릉시 교동 672-16번지 2,810.00㎡		11,220 (11,220)		
경남	임야	강원도 강릉시 교동 672-21번지 483.00㎡		2,982 (2,982)		
장녀	답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리 254-9번지 1,085.00㎡ 중 135.00㎡		50,000 (50,000)		
▶ 건물(소계)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향음플래티넘 건물 154.77㎡		2,650,000 (2,650,000)		
부	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1차삼성래미안아파트 건물 109.25㎡		1,350,000 (1,350,000)		
모	다세대주택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용산구 용문 1-78 건물 35.88㎡		550,000 (55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9년식 렉서스 ES300h 배기량(2,487cc)		25,720 (25,720)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BMW X1 40i1w6234 배기량(1,995cc)		9,040 (9,040)		
▶ 예금(소계)				718,945		

본인		(주)KB하나은행 11, NH투자증권 1, SK증권 10, 국민은행 2, 롯데손해보험 3,60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9,925, 미래에셋증권 140, 신한금융투자(주) 380, 우리은행 56,791,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9, 케이뱅크 2, 토스뱅크(주) 4,582,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33,000, 흥국생명보험 36,000	143,459	
배우자		(주)KB하나은행 101,120, (주)카카오페이증권 6, 롯데손해보험 6,285, 미래에셋증권 257, 스턴다드채터드은행 13,361, 우리은행 11,697,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42, 하나손해보험(주) 730, 한국투자증권 1,059	134,537	
부		국민은행 30,015, 새마을금고중앙회 24,130, 신한은행 67, 우체국 12,000	66,212	
모		국민은행 48,713, 새마을금고중앙회 25,925, 신한은행 13,018	87,656	
장남		우리은행 9,298, 주식회사 카카오뱅크 10, 중소기업은행 13,500	22,808	
장녀		(주)KB하나은행 100,000, NH투자증권 47,250, 삼성증권 117, 새마을금고중앙회 38,458, 씨티은행 33,251, 우리은행 5,002, 중소기업은행 11,459, 토스뱅크(주) 28,734, 토스증권(주) 2	264,273	
▶ 증권(소계)			1,390,201	
본인	상장주식	버킷스튜디오 40,000주, 예코프로에이치엔 1,500주, 코미팜 20,000주	300,320	
본인	비상장주식	(주)링글북 30,600주, (주)이피지 58,307주	449,896	
배우자	상장주식	에이엔피 4,410주, 한국알뜰 2,247주, 휴메딕스 603주	52,139	
배우자	비상장주식	(주)이피지 39,163주	302,181	
장남	상장주식	하림 1주	3	
장남	비상장주식	(주)이피지 7,000주	54,012	

경녀	상장주식	DEU 148주, Tesla 1주, 다우건설 6,133주, 삼성전자 62주, 세토피아 89주, 영풍제지 700주, 와이엘씨 60주, 한국일콜 200주, 한국건설 40주, 휴메딕스 1,942주	101,342	
경녀	비상장주식	(주)이피지 13,000주	100,308	
▶ 채무(소계)			319,035	
본인	금융채무	국민은행 285,777, 오릭스캐피탈코리아 23,258	319,035	
▶ 회원권(소계)			11,880	
본인	헬스	강남 노보텔 Health Club	11,880 (11,880)	
총 계			6,690,953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소속	권리북도	적위	(전)월경		상명	양권의
			증기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		변동사유
				증기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계)			382,700	0	0	382,700
본인	임야	권리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388-2번지 848.00㎡	384,100	0	0	384,100
본인	임야	권리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391-4번지 74.00㎡	28,600	0	0	28,600
▶ 건물(소계)			1,540,000	257,000	0	1,797,000
본인	아파트	권리북도 전주시완산구 효자동2가 덕삼효자안차 건물 146.40㎡	700,000	0	0	700,000
본인	단독주택	권리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건물 183.77㎡ (건물 183.77㎡ 중가)	0	257,000 (257,000)	0	257,000
배우자	아파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동대문구 제기동 1212 한신 건물 59.84㎡	840,000	0	0	840,000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30,430	0	0	30,430
본인	자동차	2015년식 제네시스 배기량(3,342cc)	14,090	0	0	14,090
본인	자동차	2017년식 벤츠 배기량(1,991cc)	16,340	0	0	16,340
▶ 예금(소계)			97,984	284,722	997	381,709
본인		국민은행 39, 삼성생명보험 40,700(300 중가), 세미은행고중앙회 48,000(48,000 중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8,053(48,002 중가), 전북은행 115,151(91,233 중가), 한국교직원공제회 33,155	97,583	188,532	997	285,088
기존주택(덕삼효자안차)파트) 적외선인한 중액, 퇴직금 및 은퇴소득, 연금소득 등						

배우자	국민은행 20, 농협중앙회 538(188 증가), 새마을금고중앙회 48,000(48,000 증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48,063(48,002 증가)	421	96,190	0	96,611	기존주택(대출중)자경(아파트) 전세로인한 증액, 퇴직금 및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 고지거부 및 등부계인사항						
장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차남	고지거부	0	0	0	0	독립생계유지
총 계		2,031,114	541,722	997	2,571,839	증감액 : 540,725천원 (기각변동 : 0천원)

재산등록사항공개목록

소속	전라북도 군산시		적위	시역월	상면	우종삼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건물(소계)							
배우자	아파트	전라북도 군산시 산복동 코오롱아파트 건물 84.00㎡	56.100	71.389	0	127,489	
모	아파트(전세(임차)권)	전라북도 군산시 경암동 경암동부향하나로아파트 건물 82.75㎡ (건물 82.75㎡ 증가)	0	15,573	0	15,573	임대차 신규 체결(국민임대주택)
장녀	아파트(전세(임차)권)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계룡대일빌 4단지 건물 78.77㎡ (건물 78.77㎡ 증가)	0	15,916	0	15,916	임대차 신규 체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07년식 쉐보레 배기량(2,497cc) 증가	0	2,690 (2,690)	0	2,690	중고차 매입
배우자	자동차	2011년식 S15 배기량(1,988cc)	7,410	0	2,120	5,290	자동차 보험증권상 차량 기역 반영
▶ 예금(소계)							
본인		(주)평산해보험 150(150 증가), 페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200(1,648 감소), 세미물금고중앙회 571(515 증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 777(777 증가), 신한은행 1(99 감소), 우리은행 28, 중소기업은행 58(58 증가)	2,033	1,700	1,947	1,786	예금/보험금 증가
배우자		평산해보험(주) 2,102, 교보생명보험 1,210, 농협은행 38(523 감소), 농협중앙회 1(5 감소), 롯데손해보험 726, 신한은행 508(1 증가), 전북은행 218, 한화손해보험 0(2,080 감소), 현대해상화재보험 2,243(192 증가)	9,489	196	2,610	7,044	

모		농협은행 11(증가), 농협중앙회 12(316 감소), 새마을금고중앙회 5,000(25,000 감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20 감소), 우체국 9,879(1,151 증가)	39,085	6,152	30,336	14,901	예금/보험금 증가
장녀		배우자증권 14(14 증가), 농협은행 400(400 증가), 대신증권 0(26 감소), 삼성증권 0(97 감소), 우리은행 600(600 증가), 우체국 3, 주식회사 키키오뱅크 5,455(5,155 증가), 한국투자증권 0(248 감소)	674	6,214	416	6,472	
▶ 증권(소계)			24	0	24	0	
장녀	상장주식	지니너스 0주(2주 감소)	24	0	24	0	주식보유분 매도
▶ 채무(소계)			65,622	0	628	64,994	
배우자	금융채무	삼성화재해상보험 64,984(628 감소)	65,622	0	628	64,994	채무 일부 상환
총 계			49,163	88,310	36,825	100,648	증감액: 51,485천원 (기전연동: 37,780천원)

도지사 지시사항

◇ 2023. 7. 14.(금) 09:00 간부회의 시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3 -55	지방세 징수 담당자 인센티브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상반기 지방세 사례별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45억원을 추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음. ○ 지난해 실적과 비교해 성과를 내는 등 지방세 징수에 노력한 도 및 시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세정과)</p>
2023 -56	신규공무원 멘토링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첫 시행하고 있는 신규공무원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멘티(신규공무원)와 피드백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 우수사례에 뽑힌 멘토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교육지원과)</p>
	당면·현안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철 재난안전 대비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4일 호우특보 발령에 따라 비상3단계가 가동되어 재난안전에 대응하고 있으나, 각 실국에서는 해당 업무와 관련해 장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복구하고, 특히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연재난과 / 협조 : 전 실국)</p>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임박하였으므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대응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미래산업과 / 협조 : 전 실국)</p> ○ 민선8기 2년차 추진사업 점검 및 도정혁신 신속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도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과 사업은 실국장이 직접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을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전 실국)</p> ○ 도의회 의정발언 추진상황 점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대 도의회 도정질문, 5분발언, 건의·결의안 등 의정발언 385건 중 188건이 추진중으로 의정발언 도의원에게 추진상황을 수시로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하기 바람, -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 및 과장이 해당 의원에게 사유를 직접 설명해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정발언에 대한 진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도정 현안 관계자 소통 및 커뮤니티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년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농식품부 공모 시 푸드테크 얼라이언스 활동 및 성과를 활용하기 바람. - 또한,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야 산업생태계가 조성되니, 실국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해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도정 현안에 대응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p>○ 특례 반영을 위한 적극적 부처 활동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3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북이 테스트베드 기회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부처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 앞으로 특례 반영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차관급·실장급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활동을 전개하고, 실국장 역시 특례 관련 중앙부처 활동을 통해 속도감 있게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p>○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후속조치 만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세수감소와 긴축재정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예산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회의원과 소통하며 관리를 잘 해주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전 실국)</p>
		<p>○ 세계잼버리 붐업을 위한 행사 참여 독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세계잼버리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회 붐업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시도에서 일일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도내 대기업과 양대 노총 등에도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해 주기 바람. - 아울러 직원들은 우리도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연가 등을 활용해 가족과 함께 일일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대회 붐업에 앞장서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자치행정과 / 협조 : 전 실국)</p>
		<p>○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 발굴 준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추진한 벤치마킹 아이디어 발굴은 도정 혁신의 큰 원동력이 되었음. - 이번 시즌2에서는 팀원들과 소통해 아이디어를 팀별 3개 이상 발굴하고 과장·국장과의 논의를 거쳐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발표하기 바람. - 또한, 선정되지 않은 팀별 아이디어도 실국에서 관리하며 사업화를 검토하는 등 도정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 정책기획관 / 협조 : 전 실국)</p>

익산시 공고 제2023-2001호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녹색도시조성과(☎063-859-58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3년 7월 2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익산시 금강동 745-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익산 도시계획시설(인화근린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인화공원 숨리메타누리길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L=1.2km / A=37,34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12.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8. 관계도서 : "게재 생략"
9. 의견서 제출 : 일반 및 이해관계인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 적(m 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공부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 내용	
합계				76,995	37,348						
1	금강동	745-1	철	18,168	15,824	국(국토교통부)					
2	금강동	977	도	49	49	국(국토교통부)					
3	금강동	978	구	16	16	국(농림축산식품부)					
4	금강동	226-3	철	4,998	4,998	국(국토교통부)					
5	석탄동	1043	도	46	46	국(기획재정부)					
6	석탄동	183	철	3,869	3,869	국(국토교통부)					
7	석탄동	1177	구	37,339	176	국(농림축산식품부)					
8	춘포면 춘포리	874-11	천	210	210	국(농림축산식품부)					
9	춘포면 춘포리	827	철	12,300	12,160	국(국토교통부)					

정읍시 고시 제2023-112호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정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정 읍 시 장
2023년 7월 2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상평동 56-9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정읍기상대)
 - 나. 명칭 : 국립 전북기상과학체험관 건립 사업
3. 사업면적 및 규모(변경)
 - 가. 사업면적 : 금회조성 A=19,602㎡ → A=19,731㎡
 - 나. 사업규모 : 공공업무시설 A=3,192.8㎡(건축면적 1,480.40㎡, 연면적 1,566.0㎡), 기상관측시설 A=1,618.4㎡, 기반시설 A=4,044.5㎡, 녹지 A=10,875.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전주기상지청장
 - 나.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 25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가.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일부터 ~ 2022. 12. 30.
 - 나. 변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익일부터 ~ 2023.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자 조서 : “따로붙임”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8. 열람장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도시과 도시계획팀(☎063-539-5782)

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⑤	정읍 기상대	공공 청사	정읍시 상평동 1802 번지 일원	34,219.2	증)129	34,348.2	진라북도고시 제2013-257호 (2013.11.01)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에 관한 결정내용) : 변경없음

건 폐 율(%)	용 적 율(%)	높 이
15% 이하	40% 이하	4층 이하

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⑤	정읍기상대	· 부지면적 변경 - 기정 34,219.2㎡ → 변경 34,348.2㎡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시설결정 면적 변경

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도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 및 내용	
합 계				19,731	19,731						
1	상평동	1805	대	19,731	19,731	정읍시	-	국 (기상청)	-	지상권	

김제시 공고 제2023-468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주민열람 공고

김제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3년 7월 21일

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설	11	공공청사	김제 경찰서	김제시 하동 374-12 일원	-	증)16,762	16,762	-	-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1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면적 : 16,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협소하고 위험한 청사를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로 신축

다.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결정 조서

구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비고
공공청사(경찰서)	2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

2. 주민의견 청취사항

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김제시청 안전개발국 도시과

다. 의견제출 : 의견은 김제시청 도시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열람기간내 제출
(전화: 063-540-3346, 팩스: 063-540-3171)

라. 관계도서 : 실음생략(열람장소 비치)

마. 기타사항 : 본 열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시 제2023-71호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규정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3년 7월 21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이서면 반교리 707-22번지 외 36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업
 - 명 칭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관리자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연구시설 : A=1,721,748.4㎡
(대지면적 : A블럭: 352,374.9㎡, B블럭: 175,272.74㎡, C블럭: 28,903.6㎡)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증축	변경	기정	증축	변경		
합계	60,244.71	246.66	60,491.37	81,030.01	246.66	81,276.67		
A블럭	소계	48,616.00	184.32	48,800.32	68,323.69	184.32	68,508.01	
	주1,부1~41	48,616.00	-	48,616.00	68,323.69	-	68,323.69	
	부42	-	184.32	184.32	-	184.32	184.32	분할시행
B블럭	소계	11,171.19	62.34	11,233.53	12,250.32	62.34	12,312.66	
	주1,부1~22	11,171.19	-	11,171.19	12,250.32	-	12,250.32	
	부23	-	62.34	62.34	-	62.34	62.34	금회
C블럭	소계	457.52	-	457.52	456.00	-	456.00	
	주1,부1	457.52	-	457.52	456.00	-	456.0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 주 소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건축허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순창군 고시 제2023-95호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결정도서를 순창군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순 창 군 수
2023년 7월 21일

1.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3	순창 로제비앙C.C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11-4번지 일원	-	증)800,764	800,764	금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결정 사유
13	순창 로제비앙C.C 지구단위계획구역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11-4번지 일원	800,764	·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홀골프장)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 호	폭원 (m)								
기정	소로	1	7	10	집산 도로	2,500	소로1-354 순창읍 순화리 산15-3	중로1-1 순창읍 순화리 478-12	일반 도로	-	2006. 02.22	군도 11호선
변경	소로	1	7	10	집산 도로	2,500 (1,095)	소로1-354 순창읍 순화리 산15-3	중로1-1 순창읍 순화리 478-12	일반 도로	-	2006. 02.22	군도 11호선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1-7호선	소로1-7호선	·도로폭:10m, ·연 장:2,500m (1,095m)	·골프장으로 원활한 진입로 확보(가감속차로)와 운영을 위한 도로폭 일부변경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연장임.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용 지	번호	위 치			
총계	I	800,764				800,764		
13	I	800,764	체육 시설 용지	①	골프장1홀~18홀 (티, 그린, 웨어웨이, 라프, 벙커), 연습그린(P.G), 진입도로, 카트로, 저류지(POND), 계류(CREEK), 묘포장	333,778	건축시설용지 진입도로 포함	
				건축 시설 용지	②	클럽하우스		23,894
					③	관리동, 장비 보관창고, 예지물 창고		7,056
					④	티하우스		489
					소계			31,439
			공공 시설 용지	⑤	도로(군도 11호선)	31,008		
				소계		31,008		
				녹지 용지	⑥	조성녹지	187,713	
			⑦		원지형보전녹지	216,826		
			소계			404,539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 구	획 지								
13	클럽 하우스	I	②	용도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마목, 아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파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창고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의 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수)	· 4층 이하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고 가급적 주변지형과 부합되는 배치						
				형태	지 붓	· 경사형 지붕 및 평슬라브					
					색 채	· 지붕색상은 가급적 원색사용은 제한하고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유지시켜 주며 주변 자연적 요소와 가장 부합한 무채색 색상과 대지와 부합하는 저채도의 황색계열의 색상을 권장 · 벽체는 원색사용을 금지하고,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할 것을 권장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경관을 위해 색상의 채도가 낮아 원경표현에 유리하고 깊이감을 주는 회색 계통의 색상을 권장					
				13	관리동, 장비보관 창고, 예지물창고	I	③	용도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3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8호 창고	
									불허	· 지정 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40% 이하										
높이(층수)	· 2층 이하										
형태	지 붓	· 경사형 지붕 및 평슬라브									
	색 채	·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무채색 계열 또는 저채도 색상 권장(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도면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 구	획 지				
13	티 하우스	I	④	용도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 중 가목, 나목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의 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20% 이하		
				높이(층수)	· 1층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통풍을 고려하고 가급적 주 변지형과 부합되는 배치		
형태	지 붓	· 경사형 지붕 및 평슬라브					
	색 채	· 자연지형과 조화로운 무채색 계열 또는 저채도 색상 권장(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권장)					

4)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군계획시설(도로:소로1-7호선) 내 교량 설치

- 진입도로 및 카트이용을 위해 소로1-7호선 내 교량 설치 위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에 따른다.

5) 경미한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경미한 사항	비 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	-

2. 순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폐지)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체육시설	골프장	순창읍 순화리 산10-3번지 일원	203,636	감)203,636	-	전라북도 고시 제2004-325호 (2004.12.10.)	

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결정 사유
2	체육 시설	· 기 정: 203,636㎡ · 변 경: 감)203,636㎡ · 변 경 후: -	·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산10-3번지 일원에 위치한 순창CC를 금회 9홀→18홀로 확장하고자 하나 · 2011년 11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민간이 군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을 입안할 수 없게 되어, ·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을 통하여 18홀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3. 순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계도서 : 실음생략.
4. 이해관계인 등은 관련서류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시면 순창군 건설과
(☎063-650-1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부안고등학교 공고 제2023-22호


공인 등록 및 폐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제5조(등록) 및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고)에 의거 등록공인 및 폐기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안고등학교장
2023년 7월 21일

■ 공인의 등록 및 폐기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기존 공인의 마모(마멸)에 따른 공인 재등록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3년 7월 21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기관명	공인명	인영
부안고등학교	부안고등학교장인	

폐기 공인		
기관명	공인명	인영
부안고등학교	부안고등학교장인	